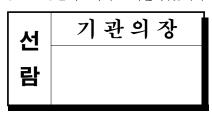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717호 2022. 4. 12.(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14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남해군 조례 제2615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3 남해군 조례 제2616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5 남해군 조례 제2617호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남해군 조례 제2618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남해군 조례 제2619호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4 남해군 조례 제2620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11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7 남해군의회 규칙 제39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31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46호 소하천 등의 준공검사 고시
공 고0
남해군 공고 제2022-43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 62 남해군 공고 제2022-45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 · · 63 남해군 공고 제2022-459호 2021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 · · 65 남해군 공고 제2022-480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 · · 87 남해군 공고 제2022-484호 남해군 대중교통 소와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89 남해군 공고 제2022-48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 93 남해군 공고 제2022-50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 94 남해군 공고 제2022-516호 도로 명주소 부여 고시 · · · · · · · · 95 남해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호 2022년 제1회 남해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 · 99 남해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3호 남해군 대체인력뱅크(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 · 104
회 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14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12일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1회"를 "3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15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12일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배"를 "5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16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12일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1년" 을 "2022년" 으로, "2021년 7월" 을 "2022년 7월" 로 한다.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7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25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5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조례 제2617호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12일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스페이스 미조란 다음에 남해힐링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명칭	관련 시설물	위 치	비고
남해힐링센터	연면적: 1,653㎡ (지하1층, 지상3층) 기계실, 소방설비실,관리실, 공연장, 북 카페, 휴게음식점, 사무실, 소매점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78일원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에 제3의2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제6호가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2. 4. 12.>

문화·관광 시설물 입장(관람)료(제6조 관련)

1. 입장(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개 인				
시설 명칭	일반	청소년 군 인	어린이	刊	고	
파독전시관			1,000			
원예예술촌		6,000	3,000	1,500		
이스지 여자기	개인 (군민)	3,000 (2,000)	2,000 (1,500)	1,500 (1,000)		
이순신 영상관	단체 (군민)	2,000 (1,000)	1,000 (1,000)	800 (500)		
김만중문학관		무료	무료	무료		
뮤지엄남해	전시실	5,000	4,000	2,000		
동창선아트스테이	물놀이장		<삭 제>			
바래길 작은미술관		무료	무료	무료		
작은영화관	2D	6,000	6,000	6,000		
역단정확단	3D	8,000	8,000	8,000		

가. 기준 연령

•일 반:만 18세 이상

·청소년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어린이 : 만 3세 이상 만 12세 미만 (단, 물놀이장의 경우 만 1세 이상 만 12세 미만으로 한다)

나. 단체(20명 이상) 입장료는 개인 입장료의 80% 범위 이내로 한다.

다. 면제대상의 경우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별표 4]

3의2. 작은영화관 대관(이용)료

가. 영화관 목적 외 대관료

(단위 : 원)

		평일	유 료	
구분	주간	야간 (영화관 휴무일)	입장시	비고
공연	45,000	50,000	수입액의 20% 징수	부가세(10%) 별도

나. 영화관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사용설비	기준	요 금	비고
וון וון	냉방료	1회	40,000	2시간 기준
냉·난방	난방료	1회	35,000	2시간 기준

1) 이용가능시간: 09:00~22:00

주간: 09:00~18:00야간: 18:00~22:00

2)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 2시간 이상 초과이용 불가
- ※ 주간에서 야간으로 초과 이용하는 경우 야간 이용료 기준으로 가산
- 다. 유료입장 대관의 경우 입장료 수입금의 10%와 이용료 중 높은 금액

6.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테이 이용료

가. 캠핑장

(단위 : 원)

	비성수기		비성수기 성수기(7~8월) (물놀이장 운영기간)		
구분	주중 (일~목요일)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주중 (일~목요일)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비고
1박2일 (4인기준)	45,000	50,000	50,000	55,000	 종량제봉투(20ℓ) 1매 지급 카라반 및 캠핑용 차량 5,000원 추가

1) 이용가능 시간 : 14:00~ 익일 11:00

2)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시 1박2일 이용료 부과

남해군 조례 제2618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12일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9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최초 검사는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하되, 제 25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3년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조례 제2619호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12일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 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 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하며 권역별 분소를 둘 수 있다.
 - ② 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남해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소):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65-9
 - 2. 남해군 동남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분소):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40-20
 - 3. 남해군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분소):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264-5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임대 농업기계" 란 농업인이 임대사업소에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 3. "임대료"란 농업기계를 사용한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임차인"이란 군으로부터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5. "장기임대"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추진에 따라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소에 관리책임자와 관리요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되고,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업무 담당자와 농업기계 정비요원이 된다.
- ③ 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하며, 임대기간은 3일 이 내로 한다. 다만, 농번기의 경우 영농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농업기계는 1농가에 1대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 임대할 수 있다.
 - ③ 농업기계의 임차목적은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 목적으로는 임차할 수 없다.
 - ④ 농업기계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사전에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기계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우선 임대하되, 반일(4시간) 임대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농번기 등 영농여건을 고려하여 출고 및 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임차인이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⑦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임대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장기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임대차계약) 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차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② 임차인은 군에 주소를 두거나 경작지가 군내에 있는 농업인과 제6조제7항에 따른 공동이용 조직으로 한다.
 - ③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임대료) ① 임대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임대료는 농업기계를 반납하기 전까지 현금,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 ③ 농업기계를 임대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만큼 추가로 임대료를 부과·징수한다.
 - 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제9조(임대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 1. 반액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전액 감면: 재해·재난복구 등에 따라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호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대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임차인이 농업기계 출고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 4.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일수를 공제한 금액
- 제11조(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1. 임차인이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 임차인이 임대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
 - 4. 임차인이 임대 농업기계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제12조(농업기계의 반환 및 책임) ① 임차한 농업기계는 작업 종료 후 청소·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며, 농업기계의 고장,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3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3조(농업기계 배달서비스) ① 군수는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기계에 대하여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 배달을 전문업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달서비스 대상 농업기계, 이용료 등 지원기준은 군수가 정하며,

배달서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임대 농업기계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임차인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편도 20,000원(왕복 40,000원)의 운 반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 2. 임대사업소의 관리 및 운영
 - 3. 그 밖에 임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남해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
- 제15조(비치대장) 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 1.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 2. 사용제한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 2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해군 농업기계은행은 이 조례에 따른 남해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로 보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별표 1]

농업기계 임대조건 위반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제6조제6항 관련)

		사용제	한 기간		w) =
임대조건 위반사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비고
농업기계를 청소 및 세척을 하지 않고 반환 할 경우	2회	3회	4회	5회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한 지시나 요 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회	4회	6회	8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회	2회	3회	4회	
농업기계 사용 중 파손하여 3일 이내 변상금 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회		2회	3회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 (연락두절 포함)		1회	2회	3회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회	2회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1회	2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1회	2회	
임대농업기계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			1회	2회	
농업기계 무단으로 개조하였을 경우				1회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발생 하였을 경우				1회	

[※] 사용제한 횟수의 누적합산 기간은 마지막으로 위반이 있던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별표 2]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제8조제1항 관련)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비고
1) 100만원 미만	8,000원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0,000원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2,000원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000원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9,000원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3,000원	
7)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27,000원	
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31,000원	
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34,000원	
10)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9,000원	
11)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55,000원	
12)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72,000원	
13)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93,000원	
14)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110,000원	
15)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136,000원	
16)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157,000원	
17)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65,000원	
18) 5,000만원 이상	178,000원	
임대사업소 내방 1시간이내 사용 (탈망기, 마늘쪽분리기, 마늘쪽선별기, 온탕소독기 등)	1,000원	

〈비고〉

- 1. 임대료 산정기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다.
 - 1일 임대료 × 85퍼센트, 백원단위 절사
- 2. 반일(4시간) 임대료는 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
- 3. 반일이란 09:00~13:00, 13:00~17:00을 말한다.
- 4. 장기임대료 산정기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따른다.
 - 1일 임대료 × 70퍼센트 × 임대일수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차사용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중립기계 립자자	74787	' (^ <i>(</i>	조세18 ·	선언)			
	성 명						('i	남/여)
신 청 인	주 소							
	연락처							
	농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수량	
임대 농업기계	부속작업기명			규격 및	형식		수량	
	작 업 종 류							
경작면적			n	1^2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Ļ	<u>년</u> 월	일까지	기(일]간)		
	□ 배달서비스 신청		□ 2	라 면신청				
트 시 기 최	_ 11172.		ㅁ감면	년사유 :				
특이사항	ㅁ배달장소:		ㅁ주민	등록번호:				
			□제출서류: □직접제출 □ 사전동의					
「남해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계 임차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감면신청) □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동의서 □ - 본인은 농업기계 임대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음주 확인시 임대수 없으며, 사고발생시 1년간 사용제한이 됩니다.					따른 같은 국인등			
남해군수 귀하		청인 :		(서명 5	또는 인)			
(비고)								

- 1. 배달서비스 및 임대료의 감면대상자는 특이사항 란에 기재한다.
- 2. 감면신청자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확인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3. 음주운전 근절 실천에 동의하여야 임대 가능하다.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7조제1항 관련)

임 대 인		임 차 인
	주 소	
남해군수	성 명	
	연락처	

임대 농업기계

농업기계명		수량	대
부 속 작 업 기		부품대	
임대차 기간	일(년월일~ 년월일)	임대일수	
임 대 료	원 입금일자: 년 월	일(입금완료)	

농업기계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m^2
특이사항	□ 배달서비스	배달료(편도/왕 배달장소 :	복) :
	□ 감면대상	감면료:	원, 감면항목:

임 대 차 계 약 조 건

-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 2. 사용 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자)
-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수리 한다.
- 5. 대여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6.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변상한다.
- 7.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농업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 8.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용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연료비·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9.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 10. 농업기계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 할 수 없다.
- 11.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 실천에 서약합니다.
- 12.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남해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일 녆 월

>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관리요워: 남해군수: (직인생략)

[별지 제3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제15조 관련)

일런 번호	기종	형 식 (규격)	수량	구입년도	구입 금액	1일 임대료	비고

[별지 제4호서식]

사용제한자 관리대장(제15조 관련)

일련	전 서군 ├──		제한 대상자	위반조항 및	처분	사용 제한	결 :		재	비
번호	년월일	성 명 (남/여)	주 소	위반내용	내용	계안 기간	담당자	팀장	과장	고

남해군 조례 제2620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4월 12일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 "제41조, 제102조 및 103조"로 하고, 같은 조단서 중 "남해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남해군의회"로 하고,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를 "정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과"를 각각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장"을 "남해군의회의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장을"을 "남해군의회의장의"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둔다.

-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

남해군 규칙 제1211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2년 4월 12일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

<앞면>

>立 セノ			기 년	로 혀	황				
	성 5	병	· .		생년월	일		(남/여)	
신 청 인			 남 남해군					(- 7)	
	휴대전화			자택			대상자와의 관계	4	
지 급 처	금융기급	<u></u>		아번호			예금주		
신 청 사 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기 타	
	 전입가족								
	· 현 황								
전 입									
정 착									
지 원	□ 전입축	하금	-11	□ 전입스	네대 주민선				
	│ □ 천입세□ │ □ 주차장	개 민십수데 이용권	<u> </u>	□ 선입시 □ 남해시	네대 주민서 다 영농정착 나랑 우대인	∤비 Ⅰ증 ţ	발급		
		s량제봉투 학생 지원		□ 천입	초·중·고등	학생	지원		
	□ 전립 네 ※ 해당항목0								
				וחופרווג			저이이		
결 혼	성 명(日)		생년월일		전입		<u> </u>	
장 려	성 명(여)			생년월일	전입일				
지 원	혼 인 일	자		□ 수혀	∥시실(년도)	있음 🗌 수혜시	씰 없음	
	원아 주	소		·					
	인적 성	명		생년	월일			(남/여)	
어 린	사항 성	명	생년		월일			(남/여)	
이 집 입 소 자	어린 유	형	□ 국·공립	□ 법인·단체	등 🗆 민	간 [□ 직장 □ 기	타	
지 원	이집 어	린이집명		입소	2일				
	※ 어린이집	또는 공공	- 국기관 등에서	입소자 지원	중복지원.		보호	현자 확인 □	
	wheel are only a surface of the surf						당자 확인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1. 전입 초·중·고등학생 : 재학증명서								
신청인	2. 전입 대	H학생 : 지	내학증명서 및	통장사본	Lile				
제출서류	3. 어딘이 4. 결혼장	십 입소사 려지원 :	지원 : 재원획 통장사본	건서 빛 농상	사논				
		–							

<뒷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시책 지원 대상의 적정성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지급처(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전입가족현황(성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어린이집 입소자 지원(자녀성명, 생년월일, 관계), 결혼장려지원(성명, 주소이력, 관계)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5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O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남해군에서 수행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인기관		확 인 내 용	해당여부	확인자
	전 입 지 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 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읍 · 면	전 입 학 생 지 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 조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
주 민 등 록 담당공무원	결 혼 장 려 지 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 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명 (인)
	어 린 이 집 입소자지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 조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읍 · 면장 (인)

남해군의회 규칙 제39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비상근무 규칙을 공포한다.

2022년 4월 1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다.
- 제3조(당직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
 -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 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시설·환경,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 제5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 등을 근무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의회 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의회의 당직실 또는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 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비상근무)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10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의회사무 과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해제일시·사유·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상근무 요령)** ① 의회사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 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10 이상
 -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5 이상
 - 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3 이상
- 제12조(전자적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 제1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22-46호

소하천 등의 준공검사 고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 등의 준공검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8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북변천(소하천)

2. 시 행 자 : 남해군수(환경물관리단장)

3.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 점용목적 :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 점용위치: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북변리 일원

6. 점용기간 : 2019. 1. 1. ~ 2022. 3. 31.

7. 착 공 일 : 2019. 1.

8. 준 공 일 : 2022. 2. 28.

9. 준공검사일: 2022. 3. 24.

남해군 고시 제2022-47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22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제3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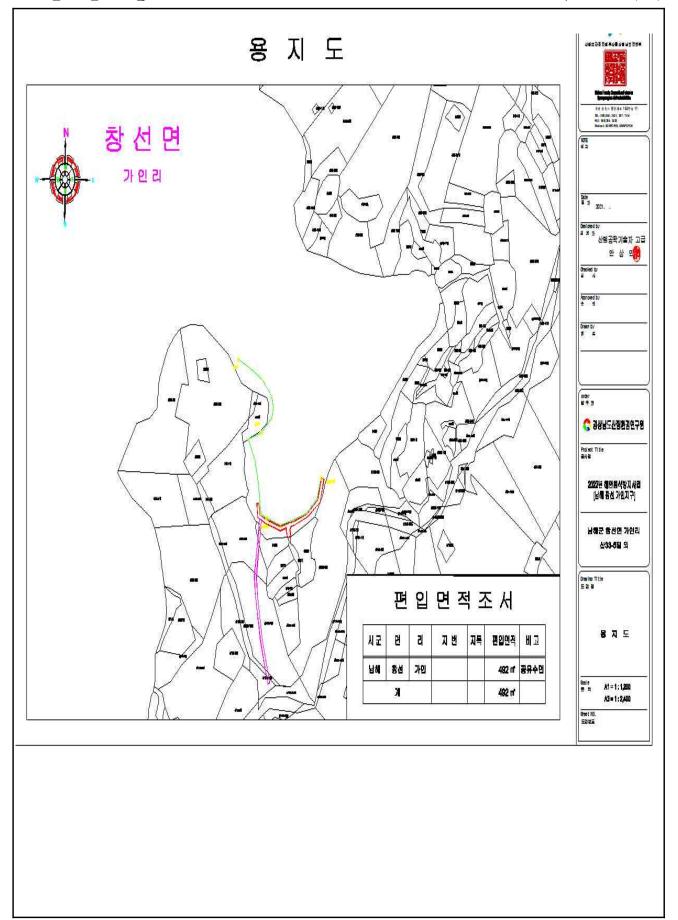
- 1. 지정 내역 : 붙임 지정내역 참조
- 2. 지정 사유 : 2022년 사방사업 시행지
-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해안침식 사방지)
- 4. 지정 년월일 : 2022. 3. 28.
- 5.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구역도 참조
- 6.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 7.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24) 또는 남해군 산림공원과 산림조성팀 (055-860-3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է	사방지 지정 조서 ^년 해안침식방지사업(남해창선가인지구)
토 지	성 명	-
소유자	주 소	공유수면
토지	소 재 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33-5임 인근 공유수면
조 사	년 월 일	2022년 3월 일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2022년 3월 일
사방지	지정 면적	492 m²
사방지	지정 사유	2022년도 사방사업을 실시할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조 사 자 직 급 : 지방시설서기보

성 명: 주형근 (인)

					사	방지	지정 내역		
	토지	소재지			지적	지정	토지소유자 또는 7	점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m²)	면적 (m²)	주소	성명	, — (사업명)
		계		1필지	-	492			
	=	소계		1필지	1	492			
남해	창선	가인		공유수민	-	492	공유수면	-	



남해군 고시 제2022-48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8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221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덖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마해구철
표지재질	莊철	田村	<u>추</u>	<u>추</u>	철재	철재	철재	철자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맨홀테두리홈	철재	유시육	철재	짺																
소재지	서면 작장리 산6-8	서면 작장리 1239-2	남면 홍현리 산 102-1	남면 홍현리 642	남면 홍현리 590	서면 노구리 산118-12	서면 노구리 산113-8	서면 노구리 산113-10	서면 노구리 산118-8	남면 임포리 137	남면 임포리 167	남면 임포리 165	남면 임포리 산203	상주면 상주리 산284-11	상주면 상주리 2020-12	상주면 상주리 2020-12	상주면 상주리 2024-3	상주면 상주리 1984-8	남면 덕월리 1174	남면 덕월리 1154-2	남면 덕월리 1152-2	이동면 신전리 산81-4	이동면 신전리 산85-9	이동면 신전리 산85-13	설천면 비란리 산45	설천면 비란리 산48-1	설천면 비란리 산42-5	서면 노구리 564-2	서면 노구리 564-5	서면 노구리 268-2	서면 노구리 산55	서면 노구리 563-10	서면 노구리 563-12	서면 노구리 331-5	서면 노구리 1418
설치일	2022-01-05	2022-01-05	2022-01-06	2022-01-06	2022-01-06	2022-01-11	2022-01-11	2022-01-11	2022-01-11	2022-01-18	2022-01-18	2022-01-18	2022-01-18	2022-01-24	2022-01-24	2022-01-24	2022-01-24	2022-01-24	2022-01-26	2022-01-26	2022-01-26	2022-03	2022-03	2022-03	2022-02-08	2022-02-08	2022-02-08	2022-02-14	2022-02-14	2022-02-14	2022-02-14	2022-02-14	2022-02-14	2022-02-14	2022-02-14
공	34°50'29.5091"	34°50'23.6462"	34-44-31.2309	34-44-34.5196	34-44-33.1444	34°51'30.1304"	34°51'31.4659"	34°51'31.5655"	34°51'31.6422"	34° 44' 36.9517"	34° 44' 36.9514"	34° 44' 36.3758"	34° 44' 34.5135"	34° 44' 0.7995"	34° 43' 59.9842"	34° 43' 59.0932"	34° 43' 57.9669"	34° 43' 55.7372"	34° 47' 13.0417"	34° 47' 9.4304"	34° 47' 10.28"	34° 46' 40.6805"	34° 46' 39.145"	34° 46' 37.5887"	34°53′38.73142″	34°53′36.89843″	34°53′34.70555″	034°52'05.50039"	034°52'04.39570"	034°52'02.86609"	034°52'00.38836"	034°52′11.01337″	034°52'09.37756"	034°52'07.52029"	034°52′04.14379″
경도	127°49'18.1335"	127°49'18.5952"	127-53-50.9222	127-53-51.0965	127-53-53.5609	127°49'44.2436"	127°49'44.4151"	127°49'42.0711"	127°49'38.9464"	127° 52' 32.3147"	127° 52' 35.173"	127° 52' 37.9695"	127° 52' 40.0255"	127° 58' 56.3971"	127° 58' 55.1699"	127° 58' 54.8221"	127° 58' 54.0503"	127° 58' 54.0593"	127° 50' 44.0961"	127° 50' 46.7978"	127° 50' 49.2277"	127° 57' 42.6143"	127° 57' 44.4829"	127° 57' 48.3652"	127°53′54.10344″	127°53′53.10935″	127°53′53.98528″	127°49'35.31423"	127°49'36.55717"	127°49'38.55474"	127°49'38.54452"	127°49′36.44961″	127°49'37.27750"	127°49'38.03627"	127°49'44.20617"
표고	98.705	123.768	166.301	153.092	160.192	143.514	149.213	145.410	133.464	80.528	82.969	89.129	102.038	44.827	42.917	42.037	40.927	38.706	3.906	4.032	10.442	44.198	40.867	34.996	105.564	100.525	86.532	898.368	77.361	81.235	87.919	62.239	60.09	59.364	57.632
독지계	275157.062	275170.274	282186.666	282190.196	282253.263	275805.011	275809.027	275749.460	275670.066	280185.495	280258.201	280329.494	280382.296	289966.611	289935.635	289927.056	289907.758	289908.659	277392.181	277461.807	277523.366	288042.343	288090.310	288189.486	282116.528	282091.793	282114.641	275569.195	275601.046	275652.172	275652.543	275596.631	275618.075	275637.819	275795.391
세계측지계	249822.303	249641.72	238840.617	238942.006	238900.185	251695.939	251737.133	251739.710	251741.417	238999.281	238999.903	238982.785	238925.852	237975.464	237950.033	237922.487	237887.587	237818.877	243785.909	243675.199	243701.903	242884.388	242837.521	242790.507	255713.79	255657.075	255589.696	252784.072	252750.289	252703.57	252627.21	252954.205	252903.968	252846.891	252744.131
원점	싸	바	바	ᄣ	ĭŀ KЮ	胀	바	ᄣ	ĭŀ KЮ	바	바	바	바	바	바	ᄣ	ᄣ	바	바	胀	ĭŀ KЮ	바	바	ᄣ	바	바	바	ĭ⊩ KЮ	ĭŀ KЮ	바	바	바	바	ĭ⊢ KЮ	IJ├ KЮ
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다 다 쩐	다 다 쩐	도근점	다 다 쩐	F 다 쩐	도 다 점	도근점	다 다 쩐	다 다 쩐	도근점	도근점	다 다 쩐	F 다 전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H 디	다 다 쩐	F 다 쩐	도근점	머니쩓	니 디 쩐							
기준점명칭	16119	16120	15233	15234	15235	16121	16122	16123	16124	15250	15251	15252	15253	12107	12108	12109	12110	12111	15254	15255	15256	11319	11320	11321	18177	18178	18179	16152	16153	16154	16155	16156	16157	16158	16159
면	_	2	3	4	5	9	7	8	6	10	Ε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56	27	28	59	30	31	32	33	34	35

덖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나 해 다 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표지재질	듗	철재	妕	철재	<u>추</u>	妕	철재	철재	<u>추</u>	妕	철재	철재	철재	철재	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u></u> 첫 개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u></u> 첫 개	<u>추</u>	철재	妕	철재	철재	철재	妕	철재
소재지	서면 노구리 244	설천면 덕신리 1595	설천면 덕신리 1590-2	설천면 덕신리 1598-4	설천면 덕신리 1599-3	서면 정포리 859-2	서면 정포리 860-1	서면 정포리 969	서면 정포리 972-1	서면 정포리 979-1	서면 정포리 산68-1	서면 정포리 1111-2	상주면 상주리 산261-22	상주면 상주리 산261-3	상주면 상주리 산261-27	상주면 상주리 산261-27	삼동면 물건리 1080	삼동면 물건리 1080	삼동면 물건리 828-2	삼동면 물건리 산 240	삼동면 물건리 산 241-26	삼동면 물건리 산 244-1	삼동면 물건리 산 241-9	설천면 문의리 1072	설천면 문의리 1072	설천면 문의리 1080	고현면 도마리 1203-5	고현면 도마리 1213	고현면 도마리 1210	서면 노구리 산50-1	서면 노구리 543-8	서면 노구리 542-3	서면 노구리 산50-6	상주면 상주리 701-2	상주면 상주리 693-1
설치일	2022-02-14	2022-02-14	2022-02-14	2022-02-14	2022-02-14	2022-02-17	2022-02-17	2022-02-17	2022-02-17	2022-02-17	2022-02-17	2022-02-17	2022-02-17	2022-02-17	2022-02-17	2022-02-17	2022-02-18	2022-02-18	2022-02-18	2022-02-18	2022-02-18	2022-02-18	2022-02-18	2022-02-18	2022-02-18	2022-02-18	2022-02-22	2022-02-22	2022-02-22	2022-02-22	2022-02-22	2022-02-22	2022-02-22	2022-02-21	2022-02-21
거	034°52'02.32387"	034°55′33.26595″	034°55′35.76484″	034°55′35.56258″	034°55′37.08705″	034°52′56.67247"	034°52′56.36746″	034°52′55.45705″	034°52′56.27727″	034°52′55.29920″	034°52′51.49407″	034°52′52.10762″	34° 44' 23.0723"	34° 44' 21.1028"	34° 44' 19.0365"	34° 44' 17.6836"	34° 46' 31.4047"	34° 46' 32.2014"	34° 46' 30.8982"	34° 46' 27.6128"	34° 46' 24.9087"	34° 46' 25.7555"	34° 46' 27.0469"	034°56′21.45384″	034°56′22.25277″	034°56′22.89847"	034°52′11.83032″	034°52′11.38780″	034°52'08.56834"	034°52'02.45185"	034°52'02.25464"	034°52′04.17131″	034°52'03.66657"	34° 43' 27.6664"	34° 43' 28.7183"
	127°49'45.92546"	127°51'42.25484"	127°51'42.59189"	127°51'43.58626"	127°51'44.59957"	127°50′13.96929″	127°50′15.13080″	127°50′16.49814″	127°50′18.11442″	127°50′19.61804″	127°50′21.36807″	127°50′16.20524″	127° 59' 1.1796"	127° 59' 1.315"	127° 59' 4.8547"	127° 59' 3.9858"	128° 02' 34.1874"	128° 02' 31.8496"	128° 02' 26.9708"	128° 02' 26.5643"	128° 02' 30.0048"	128° 02' 36.6296"	128° 02' 33.9592"	127°54'17.25486"	127°54′16.90243″	127°54'15.94386"	127°53'30.18812"	127°53′27.31307″	127°53′27.35808″	127°49′27.75289″	127°49′30.90026″	127°49′29.38606″	127°49′27.05188″	127° 59' 33.1233"	127° 59' 29.9302"
正班	66.74	20.644	18.641	23.106	23.884	58.114	58.674	55.491	62.12	59.266	59.299	26.802	107.506	103.394	97.121	93.751	9.463	10.683	11.922	22.561	41.210	18.922	23.922	17.309	14.758	15.666	17.031	23.744	23.094	56.304	65.197	54.686	49.428	53.062	39.424
두지계	275839.524	278738.311	278746.203	278771.495	278796.809	276537.832	276567.407	276602.365	276643.199	276681.636	276727.061	276595.79	290081.568	290085.607	290176.277	290154.582	295459.287	295399.585	295275.943	295266.654	295355.006	295523.196	295454.878	282659.047	282649.88	282625.374	281533.12	281460.217	281462.133	275377.915	275457.907	275418.961	275359.802	290911.044	290829.478
세계측지계	252688.407	259214.049	259291.132	259285.117	259332.319	254369.21	254360.056	254332.29	254357.911	254328.089	254211.197	254229.007	238663.034	238602.375	238539.578	238497.668	242672.520	242696.452	242655.005	242553.650	242471.223	242499.070	242538.160	260733.82	260758.36	260778.039	253030.286	253015.999	252929.121	252688.543	252683.123	252741.873	252725.831	236963.573	236995.187
원 전	II-	肿	바	KIP II-	바	바	ᄣ	바	바	바	IJ├ KЮ	바	於	바	計	IJ- КЮ	IJ- КЮ	바	바	바	於	計	IJ- KЮ	IJ- KЮ	ĭ⊢ КЮ	바	바	바	ĭŀ KЮ	바	計	KIP 마	於	바	⊒⊢ КЮ
전 편0	다 다 쩐	F 다 점	다 다 쩐	도근점	F 다 전	다 대 쩐	다 다 쩐	다 다 쩐	F 다 점	다 다 쩐	도근점	F 다 점	F 다 점	다 다 쩐	다 다 쩐	H 디	다 다 쩐	다 다 쩐	다 다 쩐	도근점	도근점	디모	H 디	F 다 전	도근점	F 다 점	F 다 점	다 다 쩐	다 디	다 다 쩐	F 다 점	도근점	도근점	다 면 쩐	다 다 쩐
기준점명칭	16160	18183	18184	18185	18186	16161	16162	16163	16164	16165	16166	16167	12112	12113	12114	12115	13337	13338	13339	13340	13341	13342	13343	18180	18181	18182	17258	17259	17260	16168	16169	16170	16171	12116	12117
원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99	57	58	59	09	61	62	63	64	65	99	29	89	69	70

덖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나 해 다 청	남해구청	다해 다	다 해 다 청	마해 라 청	나 해 다 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마해 라	다 하 다 청	마해 라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나 해 다 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표지재질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u>추</u>	철재
소재지	상주면 상주리 690	설천면 남양리 176-1	설천면 남양리 193-1	설천면 남양리 177-2	설천면 남양리 180-1	설천면 남양리 675-1	설천면 남양리 665	설천면 남양리 702	설천면 남양리 861	설천면 금음리 1253-1	설천면 금음리 1252	설천면 금음리 산194	설천면 금음리 1259-4	삼동면 지족리 728-2	삼동면 지족리 산61	삼동면 지족리 산61	고현면 갈화리 162-2	고현면 갈화리 1750	고현면 갈화리 171	고현면 갈화리 176	고현면 갈화리 186-5	고현면 갈화리 375-7	고현면 갈화리 산12-3	고현면 갈화리 산13-2	서면 서상리 1701	서면 서상리 891-3	서면 서상리 1689	서면 서상리 83-4	서면 서상리 172-1	서면 서상리 180	서면 서상리 178-1	서면 서상리 산245-3	창선면 가인리 492	창선면 가인리 산8-2	창선면 가인리 산8-2
설치일	2022-02-21	2022-02-23	2022-02-23	2022-02-23	2022-02-23	2022-02-23	2022-02-23	2022-02-23	2022-02-23	2022-02-23	2022-02-23	2022-02-23	2022-02-23	2022-02-24	2022-02-24	2022-02-24	2022-02-24	2022-02-24	2022-02-24	2022-02-24	2022-02-24	2022-02-24	2022-02-24	2022-02-24	2022-02-25	2022-02-25	2022-02-25	2022-02-25	2022-02-25	2022-02-25	2022-02-25	2022-02-25	2022-02-25	2022-02-25	2022-02-25
나	34° 43' 29.6043"	034°55′27.88578″	034°55′28.26786″	034°55′27.49403″	034°55′26.50174″	034°55′25.33872″	034°55′25.69253″	034°55′23.14450″	034°55′25.23209″	034°54′55.87407″	034°54′55.50063″	034°54'56.57964"	034°54′57.12729″	34° 48' 53.3228"	34° 48' 54.9308"	34° 48' 56.3187"	034°54′10.46138″	034°54'06.92228"	034°54'03.81214"	034°54'02.20659"	034°54'00.84128"	034°53′59.04675″	034°53′58.93724″	034°53′58.19709″	034°47'57.08651"	034°47'56.75701"	034°47′55.93588″	034°47'54.76151"	034°47'56.47391"	034°47′58.19306″	034°47'59.03818"	034°47'58.57136"	34° 53' 37.151"	34° 53' 38.1896"	34° 53' 36.812"
경도	127° 59' 28.1955"	127°54'46.80939"	127°54'44.02432"	127°54'42.98426"	127°54'40.14301"	127°53'46.48722"	127°53'47.78032"	127°53′52.40427"	127°53′54.11318″	127°54′51.58078″	127°54′50.43728″	127°54'47.71066"	127°54'46.73100"	127° 59' 42.1777"	127° 59' 42.6091"	127° 59' 43.9097"	127°51'00.35297"	127°50′58.45393″	127°50′56.35798″	127°50′55.57361″	127°50′53.59795″	127°50′52.16188″	127°50′53.05408″	127°50′53.90828″	127°50′19.98284″	127°50′24.52873″	127°50′27.55561″	127°50′35.02248″	127°50′39.57942″	127°50'40.18506"	127°50′38.91819″	127°50′37.56251″	128° 02' 6.3866"	128° 02' 5.2232"	128° 02' 8.1363"
다 표	30.875	49.186	62.231	59.264	266.99	190.998	184.738	175.323	164.255	87.11	93.717	105.485	112.053	169.888	165.869	161.280	2.758	3.459	18.001	23.205	26.652	29.718	33.043	37.957	12.067	14.57	18.031	28.058	39.51	56.654	57.814	61.825	1.547	1.298	13.318
독지계	290785.072	283424.135	283353.337	283327.155	283255.316	281893.728	281926.452	282044.524	282087.323	283554.257	283525.334	283455.815	283430.793	291042.018	291052.493	291085.123	277696.444	277649.156	277596.754	277577.259	277527.455	277491.462	277514.143	277536.024	276767.776	276883.42	276960.578	277150.695	277266.092	277281.042	277248.618	277214.277	294616.946	294587.073	294661.483
세계측지계	237022.055	259089.782	259100.912	259076.824	259045.587	258997.447	259008.644	258931.172	258995.896	258104.358	258092.584	258125.205	258141.856	247001.697	247051.361	247094.461	256653.116	256543.641	256447.343	256397.695	256355.194	256299.583	256296.4	256273.774	245138.094	245128.906	245104.246	245069.648	245123.392	245176.501	245202.274	245187.598	255785.749	255817.452	255775.761
원	ĭ⊢ КЮ	자 자	計	卟	IJ- KЮ	바	바	바	바	파 KIO	바	肿	計	바	IJ- KЮ	바	바	K(h)	바	바	张	IJ- KЮ	IJ- KЮ	IJ- KЮ	바	바	바	바	바	바	計	肿	KIP II	KIP II-	⊒⊢ КЮ
전 편0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다 다 쩐	다 다 점	다 다 쩐	다 다 쩐	F 다 점	도근점	다 다 쩐	도근점	F 다 점	다 다 쩐	다 다 쩐	다 다 쩐	다 다 쩐	도근점	F 다 점	다 다 쩐	도근점	다 다 쩐	다 다 쩐	다 다 쩐	다 다 쩐	도근점	도근점	도 다 점	다 다 쩐	다 다 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F 다 점	다 디 쩐
기준점명칭	12118	18187	18188	18189	18190	18191	18192	18193	18194	18195	18196	18197	18198	13344	13345	13346	17261	17262	17263	17264	17265	17266	17267	17268	16172	16173	16174	16175	16176	16177	16178	16179	19417	19418	19419
뗞	71	72	73	74	75	9/	77	78	79	80	81	82	83	84	85	98	87	88	89	06	91	95	93	94	95	96	97	86	66	100	101	102	103	104	105

덮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마해구청						
표지재질	PVC	PVC	PVC	철재	철재	PVC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각인	각인	철재	철재	듗
소재기	창선면 가인리 산8-2	창선면 가인리 산8-2	창선면 가인리 산8-2	창선면 율도리 산133	창선면 율도리 산155-3	창선면 율도리 산155-3	창선면 율도리 산157	창선면 율도리 산157	창선면 율도리 산157	고현면 도마리 1830-10	고현면 도마리 1685-3	고현면 도마리 1551-2	고현면 이어리 318-2	고현면 이어리 산24-14	서면 작장리 273-2	서면 작장리 1540	서면 작장리 228-1	서면 작장리 1523	서면 작장리 산166	설천면 진목리 1684-2	설천면 진목리 1684-2	설천면 진목리 1684-2	남해읍 아산리 1115-2	남해읍 아산리 1115-2	남해읍 아산리 1439-4	고현면 도마리 1250-24	고현면 도마리 1250-11	고현면 도마리 1258-1	고현면 도마리 1258-1	이동면 신전리 295	이동면 신전리 332	이동면 신전리 207	창선면 지족리 산99-2	창선면 지족리 산84-3	창선면 지족리 산82-1
설치일	2022-02-25	2022-02-25	2022-02-25	2022-02-28	2022-02-28	2022-02-28	2022-02-28	2022-02-28	2022-02-28	2022-03-02	2022-03-02	2022-03-02	2022-03-02	2022-03-02	2022-03-03	2022-03-03	2022-03-03	2022-03-03	2022-03-03	2022-03-03	2022-03-03	2022-03-03	2022-03-03	2022-03-03	2022-03-03	2022-03-04	2022-03-04	2022-03-04	2022-03-04	2022-03-10	2022-03-10	2022-03-10	2022-03-10	2022-03-10	2022-03-10
버	34° 53' 41.1562"	34° 53' 41.7053"	34° 53' 42.0963"	34° 53' 28.6569"	34° 53' 29.4702"	34° 53' 29.2156"	34° 53' 27.8069"	34° 53' 28.7166"	34° 53' 30.3124"	034°52′55.98956″	034°52′55.45999″	034°52′52.45842″	034°51′27.73621″	034°51′26.47955″	034°49′29.93683″	034°49′26.60459″	034°49′24.48304″	034°49′23.71505″	034°49′25.66944″	034°53′51.99117″	034°53′50.52688″	034°53'48.75613"	034°50′43.11491″	034°50′39.86591″	034°50′38.61592″	034°52′16.78351″	034°52′17.61835″	034°52′19.57971″	034°52′20.20621″	34° 46' 32.7572"	34° 46' 39.9015"	34° 46' 34.9641"	34°50'24.8322"	34°50'23.1931"	34°50'25.2878"
정	128° 02' 6.2042"	128° 02' 4.3311"	128° 02' 2.1052"	127° 59' 44.5644"	127° 59' 44.178"	127° 59' 41.1397"	127° 59' 32.7965"	127° 59' 31.7334"	127° 59' 29.1303"	127°52′56.60263″	127°53'00.55459"	127°52′59.68523″	127°53'34.45556"	127°53'37.17549"	127°49′24.52840″	127°49′26.91996″	127°49'29.44200"	127°49′31.95047″	127°49′35.01294″	127°55'02.66219"	127°55'06.70056"	127°55'07.89553"	127°52′53.45056″	127°52′54.96354″	127°52′56.79161″	127°53'08.53875"	127°53'10.93336"	127°53′10.74604″	127°53'10.61731"	127° 57' 36.5134"	127° 57' 39.5312"	127° 57' 42.9568"	127°59'12.4428"	127°59'15.9185"	127°59'21.1390"
면#	29.661	21.521	13.691	117.630	118.191	107.758	59.218	50.418	34.886	31.003	21.73	23.745	28.42	24.833	70.335	74.18	75.342	80.166	97.785	41.017	26.835	25.9	97.389	91.822	91.858	79.09	72.172	74.704	77.843	10.441	22.127	18.603	82.112	93.684	89.100
두지계	294611.037	294563.302	294506.659	291018.401	291008.339	290931.268	290719.842	290692.570	290625.983	280668.098	280768.603	280747.341	281653.614	281723.053	275334.614	275396.234	275460.863	275524.806	275602.137	283853.598	283956.548	283987.39	280624.067	280663.387	280710.172	280981.899	281042.491	281037.199	281033.758	287889.546	287964.179	288052.740	290258.530	290347.338	290479.348
세계측지계	255909.133	255925.563	255937.030	255487.465	255512.432	255503.819	255458.304	255486.071	255534.596	254383.611	254368.176	254275.48	251672.384	251634.272	247987.79	247885.599	247820.746	247797.603	247858.472	256138.206	256094.02	256039.728	250288.054	250188.266	250150.154	253178.054	253204.32	253264.722	253284	242638.729	242859.631	242708.308	249814.330	249764.686	249830.547
아 전		小 Kh	ĭ⊩ KЮ	肿	肿	於	КЮ	ĭ⊢ КЮ	於	ĭ⊩ KЮ	ïН	바	싸	於	於	K(h)	IJ- KЮ	КЮ П	ĭŀ KЮ	바	於	바	КЮ П	바	胀	肿	바	於	바	КЮ П	肿	胀	於	빤	IJН
전 B0	니기	F 다 전	다 다 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다 다 쩐	F 다 전	다 디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다 다 쩐	다 다 쩐	도근점	다 다 쩐	도근점	도근점	다 다 쩐	다 다 쩐	도근점	다 다 명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다 다 쩐	다 다 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ЦΊ
기준점명칭	19420	19421	19422	19423	19424	19425	19426	19427	19428	17269	17270	17271	17272	17273	16180	16181	16182	16183	16184	18199	18200	18201	10281	10282	10283	17274	17275	17276	17277	1516	1518	1517	19429	19430	19431
셙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덖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나 해 다 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표지재질	철재	철재	철재	<u>추</u>	田益	田철	田村	田철	철재	철재	PVC	철재	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각인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棹재	철재						
	창선면 광천리 산152	창선면 광천리 산151	창선면 광천리 산151	창선면 광천리 산145	남면 석교리 131	남면 석교리 118-1	남면 석교리 1532-5	남면 석교리 1533	서면 서상리 산315-1	서면 서상리 산315-1	서면 서상리 1102-6	고현면 차면리 57-3	고현면 차면리 57-3	고현면 차면리 산110	고현면 차면리 817-6	고현면 차면리 671-1	고현면 차면리 666-1	고현면 차면리 822	고현면 차면리 822	고현면 차면리 816-5	고현면 차면리 841	고현면 차면리 643-1	설천면 덕신리 1676-1	설천면 덕신리 1688-19	설천면 덕신리 1685-17	남면 평산리 1900-1	남면 평산리 1897-1	남면 평산리 1516-49	남해읍 심천리 659-13	남해읍 심천리 708-1	남해읍 심천리 708-1	남해읍 심천리 702-1	삼동면 물건리 743-4	삼동면 물건리 752	삼동면 물건리 산179-6
설치일	2022-03-10	2022-03-10	2022-03-10	2022-03-10	2022-03-11	2022-03-11	2022-03-11	2022-03-11	2022-03-14	2022-03-14	2022-03-14	2022-03-14	2022-03-14	2022-03-14	2022-03-15	2022-03-15	2022-03-15	2022-03-15	2022-03-15	2022-03-15	2022-03-15	2022-03-15	2022-03-16	2022-03-16	2022-03-16	2022-03-17	2022-03-17	2022-03-17	2022-03-17	2022-03-17	2022-03-17	2022-03-17	2022-03-21	2022-03-21	2022-03-21
古	34°51'12.9603"	34°51'13.6625"	34°51'12.4090"	34°51'13.2239"	34° 45' 44.9322"	34° 45' 46.6607"	34° 45' 48.3275"	34° 45' 47.3203"	034°47′38.01892″	034°47'39.00094"	034°47'37.44378"	034°54'43.23369"	034°54'43.23085"	034°54'42.89637"	034°54′58.81050″	034°55'00.58401"	034°55'00.41536"	034°55'00.13652"	034°54′58.76836″	034°54′57.96100″	034°54′56.66373″	034°55'00.81702"	034°55'45.56272"	034°55'46.50545"	034°55'47.72878"	34° 45' 46.9973"	34° 45' 45.8771"	34° 45' 44.2525"	034°51′16.46471″	034°51′15.99047"	034°51′14.90551″	034°51′16.14693″	34°46'59.6532"	34°47'0.3219"	34°47'0.6459"
경도	127°58'31.8502"	127°58'28.0295"	127°58'26.7017"	127°58'22.8955"	127° 54' 13.1436"	127° 54' 10.165"	127° 54' 9.3668"	127° 54' 7.2975"	127°50′32.11363″	127°50′30.52105″	127°50′31.10814″	127°51′56.90932″	127°51′59.16691″	127°52'01.82977"	127°51'35.44320"	127°51'33.78574"	127°51'32.61867"	127°51'31.89241"	127°51′32.50807″	127°51′31.85289″	127°51′28.24705″	127°51′29.54642″	127°51'42.01198"	127°51'40.48049"	127°51'40.47917"	127° 50' 44.1155"	127° 50' 44.9397"	127° 50' 46.48"	127°53'49.11618"	127°53'45.71663"	127°53'45.60125"	127°53′44.01393″	128°02'51.4042"	128°02'49.6915"	128°02'47.2336"
正班	161.907	133.839	124.375	97.362	2.994	3.124	3.615	3.235	172.135	177.511	181.011	58.983	67.175	83.243	18.877	18.346	16.362	15.708	14.885	13.709	9.73	14.247	22.125	28.3	29.871	64.530	67.479	74.378	39.379	36.689	30.525	35.103	20.338	23.513	34.493
유지계	289212.709	289115.437	289082.081	288985.145	282731.519	282655.287	282634.526	282582.180	277081.078	277040.337	277055.665	279123.604	279180.916	279248.604	278574.543	278532	278502.419	278484.057	278500.047	278483.629	278392.439	278424.325	278728.884	278689.763	278689.405	277414.995	277436.246	277475.842	282029.142	281942.912	281940.279	281899.614	295888.003	295844.240	295781.642
세계측지계	251287.433	251308.128	251269.171	251293.344	241116.930	241169.513	241220.696	241189.187	244553.071	244582.995	244535.133	257675.383	257675.791	257666.069	258150.726	258205.02	258199.568	258190.817	258148.788	258123.764	258083	258211.278	259592.953	259621.671	259659.371	241134.294	241099.952	241050.216	251328.35	251312.963	251279.501	251317.398	243547.622	243567.777	243577.109
N 면	⊪ KЮ	바	計	肿	肿	파 KIO	ᄣ	IJ- KЮ	IJ- KЮ	바	IJ- KЮ	肿	計	īН	IJ- КЮ	IJ- KЮ	卟	ᄣ	바	바	肿	IJ- КЮ	計版	ïН	IJ├ KЮ	바	바	IJ- KЮ	IJ├ KЮ	바	計	바	肿	КЮ	ш КЮ
전 편0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다 다 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F 다 점	다 다 쩐	다 다 쩐	다 다 쩐	도근점	다 다 쩐	F 다 점	다 다 쩐	도근점	다 다 쩐	디디	다 다 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 다 점	다 다 점	다 다 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F 다 점	다 디 쩐
기준점명칭	19432	19433	19434	19435	15260	15261	15262	15263	16185	16186	16187	17278	17279	17280	17281	17282	17283	17284	17285	17286	17287	17288	18202	18203	18204	15264	15265	15266	10284	10285	10286	10287	13347	13348	13349
6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덖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남해군청	남해구청
표지재질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철재	<u>추</u>	철재	철재	철재	<u>추</u>	철재															
소재지	삼동면 영지리 1880-3	삼동면 물건리 1549-15	삼동면 영지리 1921-1	삼동면 물건리 224-2	삼동면 물건리 254-5	삼동면 물건리 235-1	삼동면 물건리 1074-4	삼동면 물건리 1074-4	삼동면 물건리 239-8	서면 남상리 1469	서면 남상리 1396-24	서면 남상리 1413-1	서면 남상리 1396-18	설천면 문의리 1479	설천면 문의리 740-1	설천면 문의리 744	설천면 문의리 1463	설천면 문의리 453	설천면 문의리 852	남해읍 아산리 1425	남해읍 아산리 336-4	남해읍 아산리 355-2	남해읍 아산리 264-5	남해읍 아산리 1421-2	남해읍 아산리 261-1	남해읍 아산리 351-6	남해읍 아산리 900-6	남해읍 아산리 945	남해읍 아산리 987	남해읍 아산리 1442	남해읍 아산리 1435	남해읍 아산리 313-2	남면 덕월리 482-3	남면 덕월리 170-18	남면 덕월리 산35-24
설치일	2022-03-21	2022-03-21	2022-03-21	2022-03-21	2022-03-21	2022-03-21	2022-03-21	2022-03-21	2022-03-21	2022-03-21	2022-03-21	2022-03-21	2022-03-21	2022-02-08	2022-02-08	2022-02-08	2022-02-08	2022-02-08	2022-02-08	2022-02-09	2022-02-09	2022-02-09	2022-02-09	2022-02-09	2022-02-09	2022-02-09	2022-02-11	2022-02-11	2022-02-11	2022-02-11	2022-02-11	2022-02-11	2022-03-08	2022-03-08	2022-03-08
거는	34°49'19.3058"	34°49'17.8978"	34°49'12.9504"	34°47'52.8310"	34°47'56.8251"	34°47'54.6185"	34°47'55.3697"	34°47'55.4615"	34°47'55.5378"	034°50′58.07425″	034°50′53.58757″	034°50′52.78584″	034°50′50.67282″	34°55′43.47516″	34°55'43.67654"	34°55'45.82179"	34°55′46.31050″	34°55′48.81280″	34°55′50.39125″	034°50′22.72031″	034°50′20.25299″	034°50′16.99697"	034°50′28.35532″	034°50′28.14507"	034°50′27.34495″	034°50′24.97028″	034°50′29.23595″	034°50′26.59462″	034°50′26.09008"	034°50′25.70485″	034°50′23.12609″	034°50′22.11084″	034°46′31.87743″	034°46′35.19815″	034°46′37.89413″
정도	127°58'36.7155"	127°58'40.5272"	127°58'41.5713"	128°02'40.8369"	128°02'36.9783"	128°02'34.8614"	128°02'32.8686"	128°02'31.2322"	128°02'28.2007"	127°48′46.65162″	127°48′46.37487″	127°48′47.58921″	127°48'46.02259"	127°54'36.77776"	127°54'33.95958"	127°54'31.72902"	127°54′29.32319″	127°54'32.48756"	127°54'32.41542"	127°53′20.53563″	127°53′20.70959″	127°53′21.25170″	127°53′23.19323″	127°53′25.60481″	127°53′24.60856″	127°53'26.86062"	127°52′58.61404″	127°53'02.35666"	127°53'06.07127"	127°53'07.22965"	127°53'09.99410"	127°53′12.07931″	127°51′29.38293″	127°51′28.05447″	127°51'27.48295"
건 표	2.765	2.874	2.971	39.943	44.037	56.568	59.444	64.878	81.282	6.177	7.172	8.327	3.095	94.252	103.552	112.989	118.29	111.249	118.726	46.207	43.178	39.325	66.197	50.894	50.622	38.145	75.58	67.458	61.052	60.433	51.021	50.55	3.512	3.929	6.175
두지계	289370.426	289467.720	289495.740	295602.267	295502.896	295449.789	295398.888	295357.259	295280.171	274350.050	274344.140	274375.191	274335.918	283165.14	283093.556	283036.342	282975.144	283054.757	283052.484	281317.776	281322.871	281337.534	281383.761	281445.091	281419.997	281477.867	280759.019	280854.828	280949.346	280978.883	281049.824	281103.082	278554.409	278519.755	278504.513
세계측지계	247786.080	247743.632	247591.425	245183.634	245305.704	245237.141	245259.764	245262.162	245263.714	250696.078	250557.754	250533.297	250467.857	259567.893	259573.449	259639.046	259653.553	259731.398	259780.025	249665.622	249589.626	249489.406	249839.877	249833.942	249809.059	249736.387	249861.496	249780.935	249766.219	249754.607	249675.757	249644.938	242527.121	242629.167	242712.124
원	II-	바	바	바	II-	바	Т -	II-	바	바	바	바	바	KIP III-	바	바	바	K(b)	바	바	바	바	ïН	КЮ П	ι Ν Ν	바	바	Ж П	II-	바	바	바	ᄣ	바	ш -
쩐	다 다 면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F 다 전	도근점	다 다 전	다 다 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F 다 전	도근점	다 다 쩐	다 다 쩐	다 다 쩐	도근점	F 다 전	도근점	다 다 전	다 다 쩐	다 다 쩐	F 다 전	도근점	도근점	도근점	다 다 쩐	다 디 쩐	다 다 쩐	도근점	도근점	다 다 쩐	도근점	다 다 교
기준점명칭	13350	13351	13352	13353	13354	13355	13356	13357	13358	16188	16189	16190	16191	18171	18172	18173	18174	18175	18176	10268	10269	10270	10271	10272	10273	10274	10275	10276	10277	10278	10279	10280	15257	15258	15259
용된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506	207	208	500	210

₹	コスが母だ	푬	정	三名木口	:TI게	- ±	ᅜ	<u></u>	서비이	イゴエ	に正正正	측량성과	<u> </u>
디	/타일	(O	년 (0	□ ▼	₽	 	H (0	벋	in 	₹ ₩	#시세I	보관장소	
211	19436	디모	īН	250583.64	294084.337	0.503	128°01'43.31043"	034°50'48.54539"	2022-03-17	창선면 부윤리 368-2	妕	남해군청	
212	19437	도근점	Ж КЮ	250634.967	294092.449	0.39	128°01'43.65042"	034°50′50.20802″	2022-03-17	창선면 부윤리 368-2	妕	남해군청	
213	19438	도근점	Ж КЮ	250640.644	294043.914	1.751	128°01'41.74257"	034°50'50.40838"	2022-03-17	창선면 부윤리 368-2	철재	남해군청	
214	19439	도근점	II-	250616.606	293991.23	2.133	128°01'39.65943"	034°50'49.64597"	2022-03-17	창선면 부윤리 368-2	妕	남해군청	
215	19440	도근점	IJ⊢ KЮ	250517.726	293926.418	3.479	128°01'37.06882"	034°50'46.45932"	2022-03-17	창선면 부윤리 368-5	<u>추</u>	남해군청	
216	19441	도그점	īН КЮ	250441.635	294035.406	3.315	128°01'41.32742"	034°50'43.95428"	2022-03-17	창선면 부윤리 368-3	妕	남해군청	
217	19442	도근점	ЖЮ	250392.945	294114.561	3.115	128°01'44.42292"	034°50′42.34817"	2022-03-17	창선면 부윤리 368-3	啦재	남해군청	
218	19443	도근점	바	250473.522	294131.138	2.108	128°01'45.10783"	034°50′44.95700″	2022-03-17	창선면 부윤리 330-15	철재	남해구청	
219	14108→ 12119	도그	ш <u>Н</u>	236363.479	290192.622	3.350	127°59'04.6597"	34°43'08.4246"	2021.09.16.	상주면 상주리 1248-1	<u>추</u> 재	남해군청	
220	14109→ 12120	디	ïН	236501.312	290117.564	3.143	127°59'01.7632"	34°43'12.9206"	2021.09.16.	상주면 상주리 1274-2	철재	남해구청	
221	14110→ 12121	다고점	ĭ⊩ KЮ	236498.103	290236.528	2.971	127°59'06.4368"	34°43'12.7788"	2021.09.16.	상주면 상주리 1272-2	철재	남해구청	

남해군 고시 제2022-49호

2022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어장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장정화·정비를 위해 2022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9일

남 해 군 수

- 1. 근거 : 「어장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군수는 매년 관할어업권에 대해 어장정화 정비 실시계획수립
- 2. 대상어장: 481건, 7,478ha
 - 「수산업법」제8조,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1조에 따른 어업면허나 구획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는 수면
- 3. 계획의 주요내용
 - O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관한 사항
 - 강진만해역 7개소, 429ha 실시(바닥갈이, 폐기물 수거처리, 객토 등)
 - 미조해역1개소, 4.3ha 실시(폐기물 수거처리 등)
 - O 어장환경평가 실시
 - 어류가두리 1개소, 최초 면허유효기간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해당하는 어류 가두리 양식장

O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 어장청소 대상 : 108건, 2,337ha, 청소의무 이행
- 불법행위 지도단속

O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

- 어장 환경조사 등 재생사업 강구(강진만)
- 어업폐기물처리 지원 사업 추진

남해군 고시 제2022-52호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1일

남 해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590,017,057	566,524,506	23,492,551	4.15%
일 반 회 계	508,431,317	486,310,100	22,121,217	4.55%
특 별 회 계	81,585,740	80,214,406	1,371,334	1.71%
상수도특별회계	27,467,174	27,153,018	314,156	1.16%
청사건립특별회계	17,687,500	17,687,500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55,024	755,024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9,700	229,700	0	0.00%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5,446,342	34,389,164	1,057,178	3.07%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1	<u>· 선권)</u>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508,431,317	486,310,100	22,121,217	4.55%
지 방 세 수 입	26,439,820	23,728,253	2,711,567	11.43%
지방세	26,439,820	23,728,253	2,711,567	11.43%
세 외 수 입	19,948,351	19,779,818	168,533	0.85%
경상적세외수입	9,423,616	9,385,590	38,026	0.41%
임시적세외수입	10,036,335	9,905,828	130,507	1.32%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88,400	488,400	1	0.00%
지방교부세	215,441,000	208,715,000	6,726,000	3.22%
조정교부금등	26,901,150	25,351,150	1,550,000	6.11%
보조금	189,495,792	184,136,833	5,358,959	2.91%
국고보조금등	146,092,763	141,202,197	4,890,566	3.46%
도비보조금등	43,403,029	42,934,636	468,393	1.0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205,204	24,599,046	5,606,158	22.79%
보전수입등	30,002,352	24,446,194	5,556,158	22.73%
내부거래	202,852	152,852	50,000	32.71%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81,585,740	80,214,406	1,371,334	1.71%
大	l 방 세			_	
서	l외수입	4,630,308	4,630,308	-	0.00%
	경상적세외수입	4,366,950	4,366,950	_	0.00%
	임시적세외수입	86,858	86,858	_	0.00%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76,500	176,500	_	0.00%
大	l방교부세			_	
느	· 보조금	25,866,966	25,687,766	179,200	0.70%
	국고보조금등	18,737,613	18,562,013	175,600	0.95%
	도비보조금등	7,129,353	7,125,753	3,600	0.05%
느	¹ 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088,466	49,896,332	1,192,134	2.39%
	보전수입등	1,000,000	1,000,000		0.00%
	내부거래	50,088,466	48,896,332	1,192,134	2.44%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2022년 4월 12일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508,431,317	486,310,100	22,121,217	4.55%
인		건		비	61,358,299	60,419,253	939,046	1.55%
물		건		비	32,565,051	35,295,133	△2,730,082	△7.74%
경	상		01	전	187,356,089	178,503,953	8,852,136	4.96%
자	본		지	출	174,813,796	161,022,759	13,791,037	8.56%
භි	자	및	출	자	14,420	20,600	△6,180	△30.00%
보	전		재	원			_	
내	부		거		42,707,966	41,515,832	1, 192, 134	2.87%
예	HI H	9	Į :	기 타	9,615,696	9,532,570	83,126	0.87%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처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 신권) 비고
	합	계			81,585,740	80,214,406	1,371,334	1.71%
인		건		비	2,595,536	2,561,224	34,312	1.34%
물		건		비	5,714,279	5,931,060	△216,781	△3.66%
경	상	()	전	7,633,742	7,613,802	19,940	0.26%
자	본	7	7	출	52,622,896	51,094,832	1,528,064	2.99%
භි	자	및	출	자			1	
보	전	7	TH	연			1	
내	부	-	거	래	13,000,000	13,000,000		0.00%
예	비 비	및	기	타	19,287	13,488	5,799	42.99%

남해군 고시 제2022-53호

남해군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남해군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예정) : 2022년 12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남해군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	93,614 m²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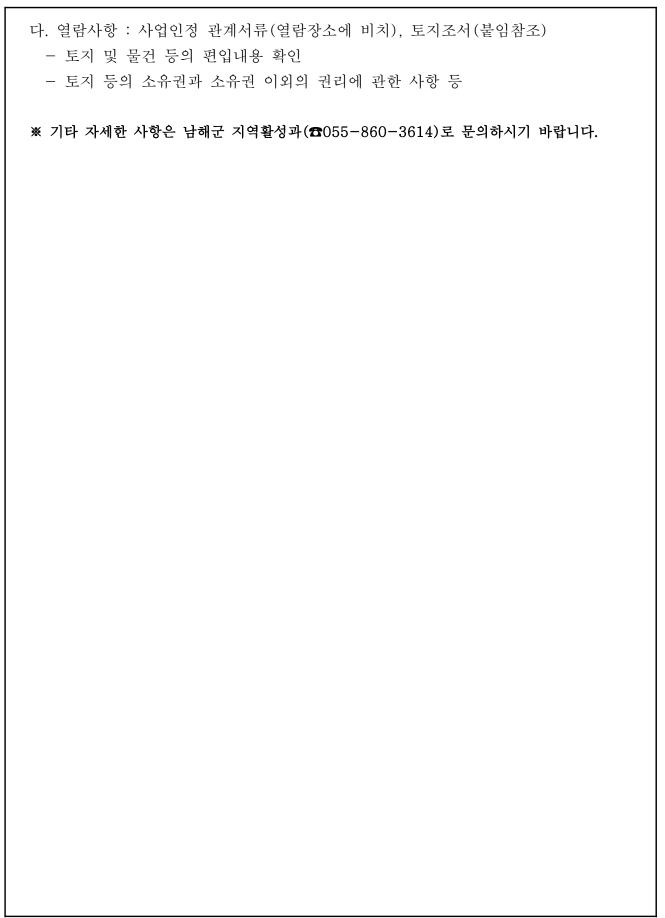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가. 열람기간 : 2022. 4. 4. ~ 2022. 4. 21. (18일간)

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T:055-860-3614, F:055-860-3706)



남해 꽃별테마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조서

	Ī	ミス소재ス	3	기	컨		대장	편입	
사업내용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면적(m²)	면적(m²)	비고
	남해	상주	양아	산56		임	735	735	
	남해	상주	양아	산56	1	도	543	543	
	남해	상주	양아	산56	2	임	788	788	
	남해	상주	양아	산56	3	임	57	57	
	남해	상주	양아	산56	4	도	555	555	
	남해	상주	양아	산57	1	임	307	307	
	남해	상주	양아	산57	5	도	1133	211	
	남해	상주	양아	산57	6	임	1995	1995	
	남해	상주	양아	산57	7	도	455	293	
	남해	상주	양아	산60	6	도	531	124	
	남해	상주	양아	산60	7	도	101	23	
	남해	상주	양아	68		전	426	426	
	남해	상주	양아	69		답	102	102	
남해 꽃별	남해	상주	양아	70		답	241	241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71		답	71	71	
	남해	상주	양아	72		답	939	939	
	남해	상주	양아	73		창	165	165	
	남해	상주	양아	73	1	답	490	490	
	남해	상주	양아	74	1	답	1137	1137	
	남해	상주	양아	74	2	답	694	694	
	남해	상주	양아	75		답	998	998	
	남해	상주	양아	76		답	982	161	
	남해	상주	양아	77		답	902	902	
	남해	상주	양아	78		답	1296	1296	
	남해	상주	양아	79		답	744	744	
	남해	상주	양아	80		답	1445	1445	
	남해	상주	양아	81		답	522	522	
	남해	상주	양아	81	1	답	585	585	

	토		\	지병	<u> </u>	,_	대장	편입	_
사업내용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면적(m²)	면적(m²)	비고
	남해	상주	양아	106	6	전	211	211	
	남해	상주	양아	107		전	583	583	
	남해	상주	양아	108		전	163	163	
	남해	상주	양아	108	1	전	144	144	
	남해	상주	양아	109		전	281	281	
	남해	상주	양아	110		전	674	674	
	남해	상주	양아	111	3	임	589	589	
	남해	상주	양아	112	3	전	40	40	
	남해	상주	양아	113	1	답	197	197	
	남해	상주	양아	113	4	도	2	2	
	남해	상주	양아	113	5	답	800	800	
	남해	상주	양아	114		답	134	134	
	남해	상주	양아	114	1	도	18	18	
	남해	상주	양아	119		답	934	934	
남해 꽃별	남해	상주	양아	119	1	답	643	643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120		답	843	843	
	남해	상주	양아	121		답	770	770	
	남해	상주	양아	123		답	367	367	
	남해	상주	양아	124		답	1385	1385	
	남해	상주	양아	125		답	1382	1382	
	남해	상주	양아	126		답	836	836	
	남해	상주	양아	127		답	985	985	
	남해	상주	양아	127	1	답	410	410	
	남해	상주	양아	128		답	1488	1488	
	남해	상주	양아	129		답	129	129	
	남해	상주	양아	130		답	245	245	
	남해	상주	양아	131		답	962	962	
	남해	상주	양아	133		답	618	618	
	남해	상주	양아	134	1	답	2069	2069	
	남해	상주	양아	134	2	답	549	549	

- Aland	Ē	ミス소재ス	रो	지병	<u> </u>	-) 11	대장	편입	שו ד
사업내용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면적(m²)	면적(m²)	비고
	남해	상주	양아	135		답	635	635	
	남해	상주	양아	136	1	답	969	969	
	남해	상주	양아	136	2	답	1121	1121	
	남해	상주	양아	137		답	863	863	
	남해	상주	양아	138		답	661	661	
	남해	상주	양아	139	1	답	460	460	
	남해	상주	양아	139	2	답	545	545	
	남해	상주	양아	139	3	도	7	7	
	남해	상주	양아	139	4	답	499	499	
	남해	상주	양아	140	1	답	192	192	
	남해	상주	양아	140	2	도	132	132	
	남해	상주	양아	140	3	답	79	79	
	남해	상주	양아	140	4	도	383	383	
	남해	상주	양아	140	5	도	219	219	
남해 꽃별	남해	상주	양아	141		전	231	231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142	1	답	995	995	
	남해	상주	양아	142	2	답	1527	1527	
	남해	상주	양아	142	3	답	565	565	
	남해	상주	양아	143		답	1035	1035	
	남해	상주	양아	144		답	942	942	
	남해	상주	양아	145		답	1174	1174	
	남해	상주	양아	산145	1	임	354	3	
	남해	상주	양아	산145	3	도	1023	116	
	남해	상주	양아	146		답	714	714	
	남해	상주	양아	147		답	926	926	
	남해	상주	양아	산148	1	도	1289	651	
	남해	상주	양아	산148	2	임	936	918	
	남해	상주	양아	산150	1	임	6744	125	
	남해	상주	양아	164		답	142	142	
	남해	상주	양아	165		답	334	334	

	토지소재지		\	지병	<u></u>	,_	대장	편입	
사업내용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면적(m²)	면적(m²)	비고
	남해	상주	양아	165	1	답	307	307	
	남해	상주	양아	165	6	전	171	171	
	남해	상주	양아	165	7	답	570	570	
	남해	상주	양아	165	9	도	165	6	
	남해	상주	양아	165	10	도	549	110	
	남해	상주	양아	165	11	전	72	72	
	남해	상주	양아	165	13	도	477	88	
	남해	상주	양아	165	14	도	60	60	
	남해	상주	양아	165	15	답	455	455	
	남해	상주	양아	166		답	552	552	
	남해	상주	양아	167		답	883	883	
	남해	상주	양아	168		답	536	536	
	남해	상주	양아	169		답	641	641	
	남해	상주	양아	169	1	답	43	43	
남해 꽃별	남해	상주	양아	169	2	답	347	347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170		답	982	982	
	남해	상주	양아	171		답	347	347	
	남해	상주	양아	172		답	112	112	
	남해	상주	양아	173		답	846	846	
	남해	상주	양아	174		답	149	149	
	남해	상주	양아	175		답	512	512	
	남해	상주	양아	176		답	783	783	
	남해	상주	양아	177		답	1012	1012	
	남해	상주	양아	178		답	893	893	
	남해	상주	양아	179		답	783	783	
	남해	상주	양아	183		답	856	856	
	남해	상주	양아	184		답	397	397	
	남해	상주	양아	185		답	238	238	
	남해	상주	양아	186		답	777	777	
	남해	상주	양아	187		답	238	238	

		ミ 지소재/	4	지병	<u>મ</u>	,_	대장	편입	
사업내용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면적(m²)	면적(m²)	비고
	남해	상주	양아	188		답	825	825	
	남해	상주	양아	188	1	답	1357	1357	
	남해	상주	양아	189		답	288	288	
	남해	상주	양아	190		답	671	671	
	남해	상주	양아	191		답	817	817	
	남해	상주	양아	192		답	231	231	
	남해	상주	양아	193		답	744	744	
	남해	상주	양아	194		답	502	502	
	남해	상주	양아	194	1	답	1290	1290	
	남해	상주	양아	195		답	942	942	
	남해	상주	양아	196		답	810	810	
	남해	상주	양아	197	1	답	79	79	
	남해	상주	양아	197	2	답	519	519	
	남해	상주	양아	198		답	555	555	
남해 꽃별	남해	상주	양아	199	1	답	707	707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199	2	답	483	483	
	남해	상주	양아	200	1	답	843	843	
	남해	상주	양아	200	2	답	602	602	
	남해	상주	양아	201		답	638	638	
	남해	상주	양아	202		답	995	995	
	남해	상주	양아	203		답	595	595	
	남해	상주	양아	204		답	1306	1306	
	남해	상주	양아	205		답	430	430	
	남해	상주	양아	206		답	456	456	
	남해	상주	양아	207		답	1018	1018	
	남해	상주	양아	208		답	324	324	
	남해	상주	양아	209	1	답	664	664	
	남해	상주	양아	209	2	답	899	899	
	남해	상주	양아	210	1	답	711	711	
	남해	상주	양아	210	2	답	360	360	

22.22	Ē	ミス소재ス	रो	지병	<u> </u>	.3.77	대장	편입	n) =
사업내용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면적(m²)	면적(m²)	비고
	남해	상주	양아	210	3	답	456	456	
	남해	상주	양아	210	4	답	337	337	
	남해	상주	양아	210	5	답	267	267	
	남해	상주	양아	210	6	답	235	235	
	남해	상주	양아	211		답	367	367	
	남해	상주	양아	212		답	505	505	
	남해	상주	양아	212	1	답	315	315	
	남해	상주	양아	213		답	436	436	
	남해	상주	양아	214		답	502	502	
	남해	상주	양아	215		답	433	433	
	남해	상주	양아	216	1	답	826	826	
	남해	상주	양아	216	2	답	658	658	
	남해	상주	양아	217		답	899	899	
	남해	상주	양아	218		답	1008	1008	
남해 꽃별	남해	상주	양아	219	1	답	1154	1154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219	2	답	512	512	
	남해	상주	양아	220		답	572	572	
	남해	상주	양아	221		답	408	408	
	남해	상주	양아	221	1	답	299	299	
	남해	상주	양아	223	1	답	1831	1831	
	남해	상주	양아	223	2	답	1326	1326	
	남해	상주	양아	224		답	830	830	
	남해	상주	양아	225		답	760	760	
	남해	상주	양아	226		전	671	671	
	남해	상주	양아	227		답	298	298	
	남해	상주	양아	228		답	873	873	
	남해	상주	양아	229		답	397	397	
	남해	상주	양아	230		답	579	579	
	남해	상주	양아	231		답	893	893	
	남해	상주	양아	232		답	754	754	

		토지소재 기	4	지병	<u>મ</u>	-) 17	대장	편입	טו ¬
사업내용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면적(m²)	면적(m²)	비고
	남해	상주	양아	233		답	853	853	
	남해	상주	양아	234		답	579	579	
	남해	상주	양아	235		답	106	106	
	남해	상주	양아	236		답	909	887	
	남해	상주	양아	237		전	1223	1223	
	남해	상주	양아	237	1	전	420	420	
	남해	상주	양아	238		전	629	629	
	남해	상주	양아	238	1	창	160	160	
	남해	상주	양아	238	2	창	256	256	
	남해	상주	양아	239		전	179	179	
	남해	상주	양아	240		전	703	703	
	남해	상주	양아	241		전	758	758	
	남해	상주	양아	242		전	489	489	
	남해	상주	양아	243		답	1015	826	
남해 꽃별	남해	상주	양아	243	1	답	75	75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243	2	답	487	487	
	남해	상주	양아	244		답	651	651	
	남해	상주	양아	245	1	답	305	137	
	남해	상주	양아	245	2	답	866	866	
	남해	상주	양아	245	3	답	992	992	
	남해	상주	양아	245	4	답	1417	1417	
	남해	상주	양아	246		전	250	250	
	남해	상주	양아	246	1	전	100	100	
	남해	상주	양아	247		답	436	436	
	남해	상주	양아	248		답	321	321	
	남해	상주	양아	249		답	621	621	
	남해	상주	양아	250		답	327	292	
	남해	상주	양아	252		답	706	569	
	남해	상주	양아	253		답	809	17	
	남해	상주	양아	256		답	615	87	

	5	E 지 소 재 7	3	지 변	지 번		대장	편입	
사업내용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지목	면적(m²)	면적(m²)	비고
	남해	상주	양아	257		답	483	79	
	남해	상주	양아	258		답	403	401	
	남해	상주	양아	259		답	741	737	
남해 꽃별	남해	상주	양아	260		답	780	780	
테마공원 조성사업	남해	상주	양아	1946		도	5802	600	
	남해	상주	양아	1948		도	1382	131	
	남해	상주	양아	1957		구	1716	276	
	남해	상주	양아	1958		도	1610	200	

남해군 고시 제2022-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7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부윤천(지방하천)

2. 성 명: 정기0

3. 주 소 : 경남 진주시 정촌면 강주길 00

4. 점용목적 : 진입로 사용

5. 점용위치 : 경남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343번지(1281-52관련)

6. 점용면적 : 41 m²

7. 점용기간 : 2022. 4. 7. ~ 2026. 12. 31.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43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남 해 군 수

	T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설영0	주소	경산시 대학로 00					
소	하천명	사무중천	사무중천						
7.1	위치	남해군 이동면 용	관련)						
공사 (점용 • 사용)	면적	폐천부지(廢川敷地 0.5㎡ 예상 면적				m²			
개요	기간	2022. 3. 25. ~ 2							
	목적 및 사유	농막 신축 관련 우수관로매설							
	1								

제 717 호 (63)

남해군 공고 제2022-45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 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년 3월 25일

남 해 군 수

- 1. 사용 및 폐기 개시일 : 2022. 3. 2.
- 2. 사유

-폐기 및 등록 : 민원발급전용 인증기기 교체로 폐기 및 신조

등록

3. 등록, 폐기 공인명 인영

가.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구분 인영	
이동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 정사각형 (민원발급용 인증기)	闻기		이동면
상주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 정사각형 (민원발급용 인증기)	闻기	전환자무 강주면 장다	상주면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창선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 정사각형 (민원발급용 인증기)	闻기		창선면
삼동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 정사각형 (민원발급용 인증기)	闻기		삼동면

나. 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이동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 전서체 (민원발급용인증기)	티		이동면
상주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 전서체 (민원발급용인증기)	등록		상주면
창선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 전서체 (민원발급용인증기)	등록		창선면
삼동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 전서체 (민원발급용인증기)	드록		삼동면

끝.

남해군 공고 제2022-459호

2021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남 해 군 수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21년도에는 재해취약지역 점검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자연재난(태풍, 호우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 과 20명으로 지난해 보다 1명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9종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7개소,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9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65개소 등 총 338개소 설치되었으며, 지난해와 같습니다.
 -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남해군수를 본부장으로 13개 협업 부서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은 자원봉사단체·특수단체가 5.629명으로 전년대비 937명 증가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 연도 확보 기준 액이 149백만원으로, 기준액 대비 100% 확보되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은 지난해 보다 1건 증가하였고, 낙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추가 작성되었습니다.
- ◈ 그 밖에
 - 우리군은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는 모든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남해군에서 전액부담하고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공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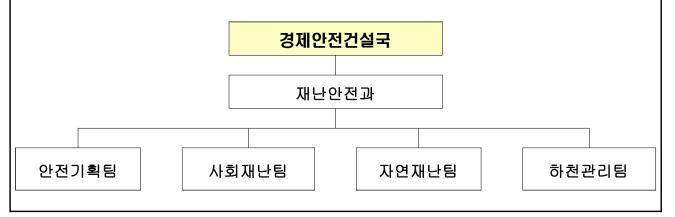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해 당 없 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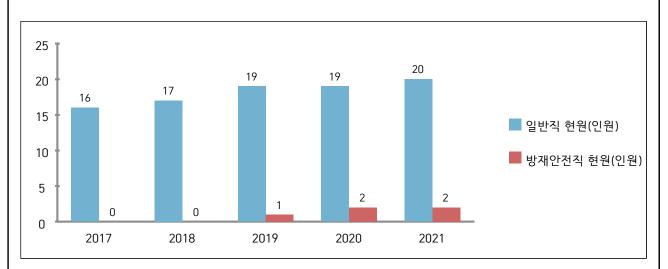
יור	별	계				일 반 즈	ļ			기타
14	2	Д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다
계	정원	20	20	_	1	4	6	7	2	_
AI 	현원	20	20	-	1	5	2	5	7	_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וה	н	계		일 반 직						
과	2	Л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וער	정원	2	2	_	_	_	-	1	1	
계	현원	2	2	ı	_	_	_	1	1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직 현원(인원)	16	17	19	19	20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_	_	_	2	2



-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2021년 신규임용으로 1명 증원

②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7	전 읍.면
자동우량관측장비	1	상주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9	전 읍.면(상주면 기상청 관리)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65	전 읍.면
재해문자전광판	8	남해, 상주, 송정, 사촌, 두곡, 설리, 삼동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남해, 상주, 삼동, 미조, 남, 창선
위성전화기	6	재난안전상황실
농어촌 경보방송 시스템	5	이동, 서면, 창선, 고현, 설천
기타	1	위성DMB(조도)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9	239	237	237	237
자동우량관측장비	3	3	3	1	1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9	9	9	9	9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6	15	33	65	65
재해문자전광판	6	6	8	8	8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6	6	6	6
위성전화기	6	6	6	6	6
농어촌 경보방송 시스템	5	5	5	5	5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자동기상관측시스템 2개소, 재해일제방송시스템 자동수신단 말장치 교체 120개소)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 · 훈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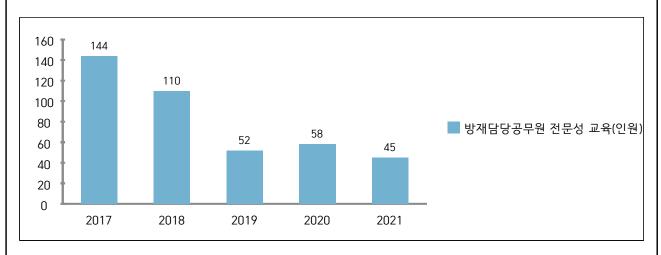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재난공보과정	2021. 2. 15. ~ 2021. 2. 16.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지자체 부단체장 재난안전전문교육 과정	2021. 2. 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관리실무과정	2021. 3. 3. ~ 2021. 3. 5.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1	
다중이용시설	2021. 3. 29. ~ 2021. 3. 3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매뉴얼(초미세먼지)과정	2021. 6. 3. ~ 2021. 6. 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현장드론활용과정	2021. 6. 14. ~ 2021. 6. 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매뉴얼(댐붕괴)과정	2021. 6. 21. ~ 2021. 6. 22.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방재안전직렬심화과정	2021. 6. 23. ~ 2021. 6. 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공보과정	2021. 8. 2. ~ 2021. 8. 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매뉴얼(초미세먼지)	2021. 8. 4. ~ 2021. 8. 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5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단과정	2021. 8. 5. ~ 2021. 8. 6.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4	
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	2021. 8. 9. ~ 2021. 8. 1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재난안전힐링과정	2021. 8. 12. ~ 2021. 8. 1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9	
재난매뉴얼(유해물질)	2021. 8. 23. ~ 2021. 8. 2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재난대응정책과정	2021. 8. 24. ~ 2021. 8. 26.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재난안전과4차산업혁명과정	2021. 8. 25. ~ 2021. 8. 27.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회재난대응과정	2021. 8. 30. ~ 2021. 9. 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민방위법령및업무지침과정	2021. 9. 2.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매뉴얼 (공동구)	2021. 9. 2. ~ 2021. 9. 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재해영향평가과정	2021. 9. 8. ~ 2021. 9. 1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통신망관리과정(2021년 4기)	2021. 9. 9. ~ 2021. 9. 1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과정	2021. 9. 13. ~ 2021. 9. 1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구호심리과정	2021. 9. 29. ~ 2021. 10. 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소·하천관리과정	2021. 10. 25. ~ 2021. 10. 26.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공보과정	2021. 11. 22. ~ 2021. 11. 2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144	110	52	58	45



- ☞ 구체적 내용설명(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대상 변경
 - 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처리 실적
- ◈ 제보·처리 실적 현황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완료	진행	불가	비고		
해 당 없 음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 위원장 : 군수 • 위원 : 12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 부군수 • 위원 : 12 인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 지역 축제 안전관리 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본부장 : 군수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_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_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원봉사관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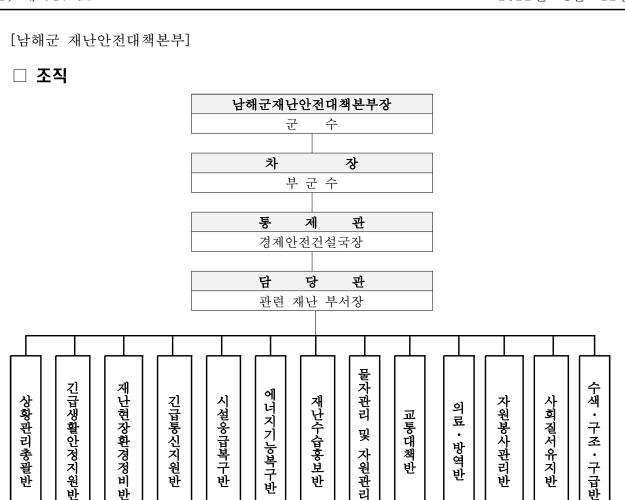
료

방 역

사회질서유지반

구조・구급반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긴급통신지원반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 (재난안전과)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에너지기능복구반

재난수습홍보

및

자원관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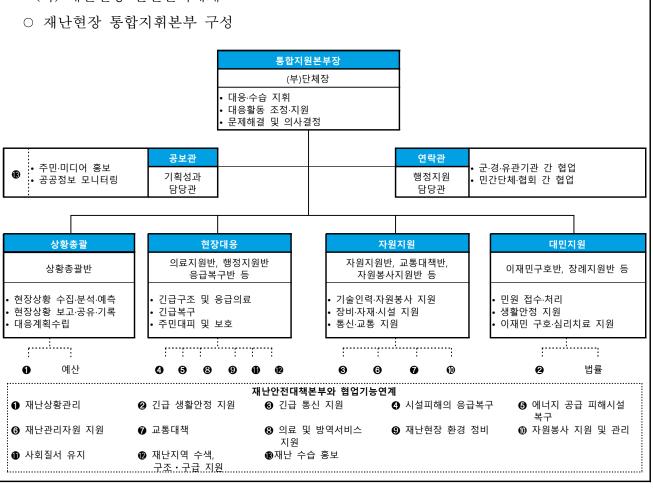
亚

통대책반

시설응급복구반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주민복지과)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환경오염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환경물관리단, 해양수산과)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행정지원담당관)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 (소관부서별 지원) * 공공·사유시설(화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지역활성과)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기획성과담당관)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 (재난안전과)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건설교통과)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주민복지과)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남해경찰서)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남해소방서)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 (나)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임무 및 역할	담당자	전화번호
남해소방서	- 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 긴급구조활동 통합 및 조정	현장대응단	860-9260
남해경찰서	- 도로통제, 우회도로 확보 등 교통대책	생활안전 교통과	860-2346
제8962부대 2대대	- 인명구조 활동 지원(인력, 장비)	남해대대	863-4113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_	900-1400
한국전력 남해지사	- 전력설비 복구인력 및 장비 현장지원 - 복구 시행	-	860-2203
KT 사천지점	- 통신시설 복구인력 및 장비 현장지원	남해지사	862-0110
남해교육지원청	- 학교시설 보호 및 복구 - 이재학생 대책(공납금 면제 및 지원 등) -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 등 - 학생에 대한 방재교육 지원 및 홍보	행정지원과	860-4160
부산지방기상청	- 기상통보 및 특보 발효	통영기상대 남해기성관측소	645-7137
통영해양경찰서	- 해상에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남해파출소	647-2341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 피서객 대피 - 기상상황 홍보 등	한려해상 관리사무소	860-5800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2019. 10. 04.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	사회, 경제적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군민에 게 긴급재난소득 지급	2020. 6. 9.	
남해군 마을안전지킴 이 운영조례	마을안전지킴이 운영 및 재난, 생활안전망 구축	2020. 4. 14. (2020. 12. 8.)	
남해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각종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 수습 지원	2018. 2. 27. (2019. 3. 14.)	
남해군 안전관리위원 회 운영 조례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5. 10. 4. (2018. 8. 17.)	
남해군 안전관리자문 단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남해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과 한 사항 규정	2004. 12. 30. (2019. 12. 12.)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 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 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	2017. 6. 30. (2017. 11. 10.)	
남해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어린이 놀이이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 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5. 12. 28.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 전관리 조례	물놀이사고 예방 및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	2013. 5. 8. (2015. 10. 2.)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4. 12. 30. (2021. 8. 9.)	일부개정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예경보등에 관한 사항 규정	2005. 12. 12. (2020. 9. 8.)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 영하는 자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규정	2014. 2. 28. (2019. 12. 12.)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2019. 3. 14.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2006. 3. 17. (2018. 11. 19.)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남해군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	2005. 12. 29. (2021. 5. 17.)	전부개정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 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에 관한 조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1. 4. 15. (2015. 10. 2.)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 물 위험도 평가단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2012. 5. 4. (2017. 11. 10.)	
남해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남해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19. 6. 1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 우에 관한 조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8. 8. 17.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 원조례	의용소방대 지원 및 현장대응 능력강화를 위한 지원 규정	2018. 2. 27. (2019. 3. 14.)	
남해군 주부민방위기 동대 설치 및 운영조 례	남해군 주부민방위 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5. 12. 4.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 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 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2017. 11. 10. (2020. 9. 8.)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 료 징수조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1996. 7. 24. (2021. 11. 8.)	일부개정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송신소	KBS 망운산 송신소	통제실	KBS 순천방송국	1978.1.	철조망 CCTV 설치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импв		YLOUHI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미FDA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장	남해군 이동, 삼동, 고현, 설천, 창선면	하수처리 시설, 하수관로 설치	2018. 1. ~ 2022. 12.	46,548	하수처리 시설 설치
회룡·노구·곤유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남해군 서면 회룡, 정포, 노구, 유포, 창선면 곤유, 당항	하수처리 시설, 하수관로 설치	2020. 1. ~ 2022. 12.	19,277	하수처리 시설 설치
원예예술촌 (둔촌)하수 처리시설 설치	삼동면 동천리 (동천, 내동천, 화암, 둔촌, 화천, 금천)	하수처리 시설, 하수관로 설치	2017. 1. ~ 2022. 2.	9,342	하수처리 시설 설치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동면, 고현면, 삼동면, 설천면, 창선면	하수관로 설치	2021. 1. ~ 2023. 12.	16,526	하수관로 설치
2021년 하수처리 시설 기술 진단결과 개선시설 공사	미조 외 7개소 등	기계설비 교체 및 개량 7개소	2021. 6. ~ 2021. 10.	275	하수처리시설 효율성 증대
대지포 시설확충사업	삼동면 물건리 일원	파도막이 설치	2021. 5. ~ 2021. 9.	118	월파 및 침수 피해예방
차면항 시설확충사업	고현면 차면리 일원	해수유통구, 계단설치	2021. 7. ~ 2021. 12.	94	재난재해 예방
도마항 시설확충사업	고현면 도마리 일원	선착장 숭상	2021. 9. ~ 2021. 12.	105	월파 및 침수 피해예방
고사항 시설확충사업	설천면 진목리 일원	해수유통구 설치	2021. 7. ~ 2021. 11.	61	재난재해 예방
옥동항 시설확충사업	설천면 금음리 일원	계단 설치	2021. 9. ~ 2022. 3.	140	재난재해 예방
단항2항 시설확충사업	창선면 대벽리 일원	방파제 연장	2021. 7. ~ 2022. 1.	407	월파 및 침수 피해예방
서대항 시설확충사업	창선면 서대리 일원	파도막이, 선착장 숭상	2021. 9. ~ 2022. 2.	142	월파 및 침수 피해예방
금전항 유지보수사업	상주면 상주리 일원	TTP 보강	2021. 7. ~ 2021. 10.	222	월파 및 침수 피해예방
답하항 유지보수사업	미조면 미조리 일원	TTP 보강	2021. 3. ~ 2021. 6.	136	월파 및 침수 피해예방
덕월항 피항지 조성사업	남면 덕월리 일원	접안시설	2021. 9. ~ 2021. 12.	217	월파 및 침수 피해예방

(78) 제 717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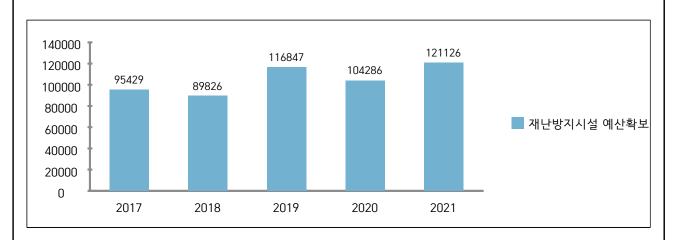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월포항 보수공사	남면	계단 설치	2021. 8. ~ 2022. 2.	98	재난재해 예방
작장항 보수공사	서면 작장리 일원	방파제 연장	2021. 7. ~ 2021. 12.	206	월파 및 침수 피해예방
정거소하천 정비	이동면 정거마을	소하천 정비	2016. 1. ~ 2021. 12.	9,184	재난재해예방
덕신소하천 정비	설천면 덕신마을	소하천 정비	2018. 1. ~ 2023. 12.	11,100	재난재해예방
전골들정비	상주면 금전마을	소하천 정비	2019. 12. ~ 2022. 12.	2,058	재난재해예방
재난 예경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남면, 이동면, 고현면, 창선면, 서면	예경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021. 3. ~ 2021. 10.	434	재난재해예방
동대소류지 개보수공사	창선면 동대리	제방 L=60m, 그라우팅 147m	2021. 3. ~ 2022. 6.	1,500	저수지 유지관리
사포소류지 보수공사	창선면 사포마을	여수토방수로 13.3m, 사통 7.6m, 차수공사 L=67m	2020. 10. ~ 2021. 4.	370	저수지 유지관리
상심천저수지 개보수공사	남해읍 내금,섬포마을	저수지 개보수 2개소	2018. 10. ~ 2022. 2.	2,566	저수지 유지관리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백만원)

2022년 4월 12일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95,429	89,826	116,847	104,286	121,126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신규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가

⑦ 「재난 및 인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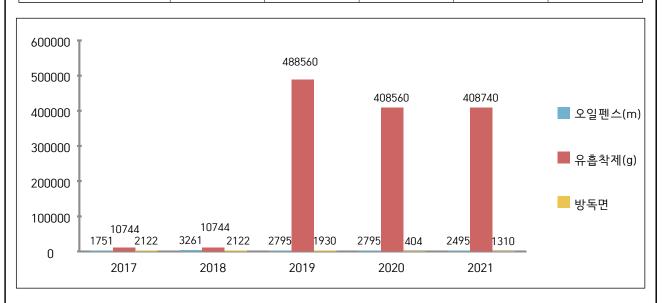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휀스	유흡착제	방독면	유처리제
十七	Л 	km	천매	개	kl
총계	412,545	2,495	408,740	1,310	_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오일펜스(m)	1,751	3,261	2,795	2,795	2,495
유흡착제(g)	10,744	10,744	488,560	408,560	408,740
방독면	2,122	2,122	1,930	404	1,310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재난관리자원 수시 사용 및 구매 등으로 인한 보유량 변동

[의료시설]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2	32	80	3	142	_
병 원	1	11	20	1	142	_
보건소	1	21	60	2	_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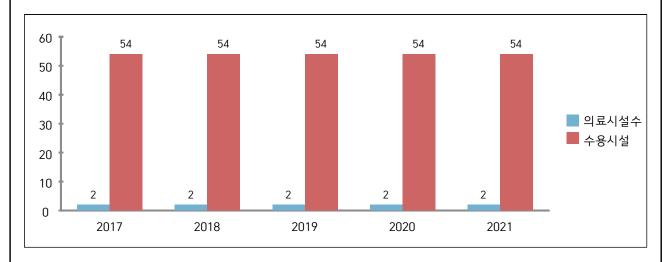
(80) 제 717 호

[수용시설]

	합	계	학	교	마을	회관	경로	문당	관공	공서	기	타
구분	개소	수용 인원										
총계	54	21,153	11	14,108	34	2,449	_	-	9	4,596	_	_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의료시설수		2	2	2	2	2
V O 11 M	개소	54	54	54	54	54
수용시설	수용인원	21,153	21,153	21,154	21,153	21,153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증감 없음

나. 장비 지정

[구조장비]

구분	À	방호복	수중펌프	화물트럭	고소작업 트럭	굴착기
총계	876	800	12	54	1	9

[복구장비]

구분	계	제설기	살포기	굴삭기	방역차	덤프 트럭
총계	25	4	2	1	2	16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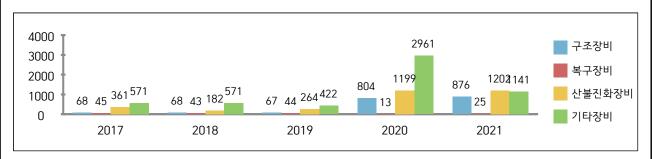
구분	Л	산불진화차	등짐펌프	갈퀴
총계	1,202	5	515	682

[기타장비]

구분	1	계	전기톱	응급구호 세트	취사구호 세트	모포	적외선 체온계	위성 전화기
총기	1	1,141	8	499	107	400	121	6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구조장비	68	68	67	804	876
복구장비	45	43	44	13	25
산불진화장비	361	182	264	1,199	1,202
기타장비	571	571	422	2,961	1,141



-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기타장비 집계 항목 변경

다. 인력 지정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인원	88	44	22	10	6	0	5	1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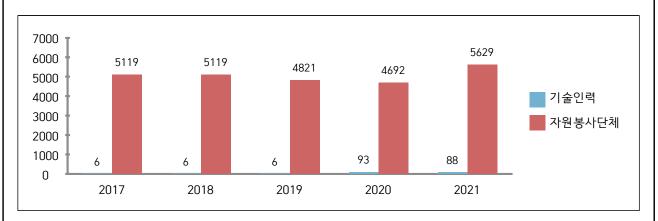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인원				해 당	없 음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구분	계	의용 소방대	산악 구조대	자율 방재단	자율 방범대	대한 적십자사 남해지구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해병대 전우회	모범 운전자 회	여성 단체 협의회	기타
인원	5,629	470	_	181	232	327	230	38	47	2,225	1,879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술인력	6	6	6	93	88				
기능인력		해 당 없 음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5,119	5,119	4,821	4,692	5,629				



-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단체 명단 재정비 및 현행화로 일부 수치 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149백만원	149백만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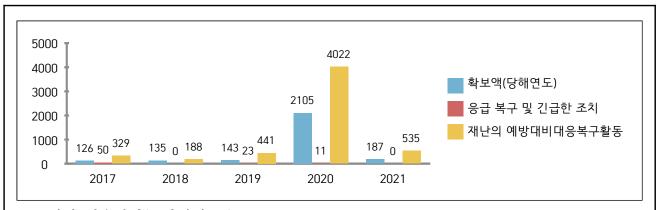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2,320백만원	2,320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확보액 (당해연도)	126	135	143	2,105	187
사		합 계	379	188	464	4,033	535
용	유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50	-	23	11	-
액	공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329	188	441	4,022	535



- ☞ 구체적 내용설명(증감원인 등)
- 법정 적립기준액 100% 확보
- 2021년의 경우 총 2개 기금사업 추진으로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목표를 대체로 달성하여 재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함
- 노후된 예경보시스템 교체를 통한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로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코로나19 상황으로 실내 무더위쉼터 조정 운영 등에 대비하여 야외 무더위쉼터 확충(12개소) 운영
- 무더위쉼터 냉방기 정비, 주요관광지 미스트 쿨링팬 정비, 살수차 운행을 통한 열섬현상을 완화 및 온열질환자 사전 예방
-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예산 규모가 작은 편이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기금적립액 증액 필요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재난안전과	2021	풍수해 재난대응
지진	재난안전과	2021	지진 재난대응
대형화산 폭발	재난안전과	2021	대형화산폭발 재난대응
적조	해양수산과	2021	적조 재난대응
가뭄	재난안전과	2021	가뭄 재난대응
조수	해양수산과	2021	조수 재난대응
산사태	산림공원과	2021	산사태 재난대응
낙뢰	재난안전과	2021	낙뢰 재난대응
한파	재난안전과	2021	한파 재난대응
폭염	재난안전과	2021	폭염 재난대응
산불	산림공원과	2021	산불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물관리단	2021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물관리단	2021	대규모 수질오염 대응
대규모 해양오염	해양수산과	2021	대규모 해양오염 대응
다중밀집 대형화재	재난안전과	2021	다중밀집 대형화재 대응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과	2021	해양선박사고 대응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지역활성과	2021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응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도시건축과	2021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응
가축질병	농축산과	2021	가축질병 재난대응
감염병	보건행정과	2021	감염병 재난대응
전력사고	지역활성과	2021	전력사고 재난대응
보건의료	보건행정과	2021	보건의료 재난대응
식용수	환경물관리단	2021	식용수 재난대응
육상화물운송	건설교통과	2021	육상화물운송 사고 대응
초미세먼지	환경물관리단	2021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가스	지역활성과	2021	가스 재난대응
위험물	재난안전과	2021	위험물 재난대응
저수지붕괴	건설교통과	2021	저수지붕괴 재난대응
문화재	문화관광과	2021	문화재 재난대응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용	비고
풍수해	2021.09.09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지진	2021.09.09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대형화산 폭발	2021.09.09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적조	2021.06.25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가뭄	2021.09.09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조수	2021.06.25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산사태	2021.09.24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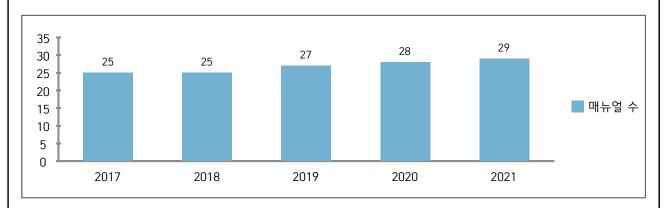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용	비고
낙뢰	2021.09.09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한파	2021.09.09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폭염	2021.09.09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산불	2021.09.07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대규모 수질오염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대규모 해양오염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다중밀집 대형화재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해양선박사고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2021.09.09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가축질병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감염병	2021.10.19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전력사고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보건의료	2021.09.10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식용수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육상화물운송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초미세먼지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가스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위험물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저수지붕괴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문화재	2021.06.28	주민대피계획, NDMS 등록 및 현행화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1. 16.(화)	풍수해 발생에 따른 대응 훈련	재해위험지구, 재난대비 비축자원 현황 점검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뉴얼 수	25	25	27	28	29



- ☞ 구체적 내용 설명(증감원인 등)
- 낙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 피보험자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보험기간 : 2022. 3. 1. ~ 2023. 2. 28. (1년)

- 보 험 료 : 남해군 일괄납부

- 보험내용 : 화재, 폭발, 교통사고, 일사병 등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등

- 보험회사: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남해군 재난안전과 (담당자: 박수지 전화: 055)860-3426)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2 - 480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년 4월 1일

남 해 군 수

- 1. 사용 및 폐기 개시일 : 2022. 3. 30.
- 2. 사유

-폐기 및 등록 : 민원발급전용 인증기기 교체로 폐기 및 신조 등록

3. 등록, 폐기 공인명 인영

가.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 정 사각 형 (민원발급용 인증기)	聞기		남면
창선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 정사각형 (민원발급용 인증기)	聞기		창선면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수인 민원실전용	2.4cm 정사각형 (민원발급용 인증기)	聞기		민원지적과

나. 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 전서체 등록 (재무과세증명인증기)			남 면
창선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정사각형 한글 전서체 (민원발급용인증기)			창선면
남해군수인 민원실전용	2.4cm 정사각형 한글 전서체 (민원발급용인증기)			민원지적과

끝.

남해군 공고 제2022-484호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 행복택시 수혜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항 "500미터"를 "400미터"로 개정하여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 회관까지의 거리 조건을 축소함으로써 행복택시 수혜 지역을 확대.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2년 4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⑤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55, 팩스 055-860-370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55-860-34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500미터"를 "40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행대상 마을 선정) 보물섬 행복택 시 운행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운행대상 마을 선정)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5 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생 략) 	1 400미터 2.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 차. 생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생략

-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③ ~④ 생략

제 717 호 (93)

남해군 공고 제2022-48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남 해 군 수

	T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양창0	주소	대구광역시	시 동구 동호로 00
소 소	하천명	정거천			
	위치	남해군 이동면 1802번지(1030-4, 1031-4, 1032-3관련)			1032-3관련)
공사 (점용ㆍ사용)	면적	23 m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개요	기간	2022. 4. 7.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유 진입로 사용			

남해군 공고 제2022-50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한국전력공사 남해지사장	주소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읍 남해대로 2962번지
소 	하천명	전골들천			
	위치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68-1, 1669-6번지			
공사 (점용 • 사용)	면적	0.221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개요	기간	2022. 4. 8. ~ 영구			
	목적 및 사유	전주 이설 2개소			
·		<u> </u>		·	

남해군 공고 제2022-51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7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541-8 외 29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대로1970번길 83-1 외 2건

연번	종 전 주소	도로명 주소	효력 발생일	비고
		[별지 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55-860-3642~3644)에문의 또는 남해군청 지정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1	더닒																																판뉴			
		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창선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중심도로임을 반영	탑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미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양화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군의 중심도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조성되는 녹색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길임을 반영	남해본섬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남해군의 동부대로	행정리를 이용, 마을주변에 버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자가 들어가는 다섯 군데의 산이 있다하여 유래	남해군의 중심도로	선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군의 동부대로	강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양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금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보리암, 용문사와 함께 남해 3대 사찰인 화방사가 위치하는 길임을 반영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평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남해군의 중심도로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행정리를 이용, 마을주변에 버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자가 들어가는 다섯 군데의 산이 있다하여 유례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질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유사회부명들고	남혀대로의 시작지점에 사부터 약 19,73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콩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日本 上 一 日 年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1	도로병고시일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1023	20090427	20090427	20090702	20090427	20090427	20090702	20090427	20090702	20090427	20090427	20090702	20091023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100915	20090427	20090427	20090702	20090427	20090427	20090427	20091023		70 70 70 70	92232206	30220015	
-	효력발생일	20220331	20220331	20220330	20220329	20220329	20220325	20220324	20220324	20220317	20220317	20220316	20220315	20220315	20220314	20220314	20220314	20220311	20220311	20220310	20220308	20220307	20220307	20220304	20220303	20220303	20220302	20220302	20220302	20220302	20220302	K0	(0)	8	-	_
	도로맹수소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541-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145-2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76번길 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204번길 26-12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486번길 20-1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960번질 14-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52번길 3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3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9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130-1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21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115-2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80-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75번길 25-1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238번길 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158-12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202번길 5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356번길 1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469번길 5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332번질 51-2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 1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375-2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로51번질 13-5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49-46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017-4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51-1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16번길 11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329-57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803-10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질개로177번길 76	핖	<u> 주출</u> 융골품	1-131 준데1061 플만하무 교육이 포워되는 1971년	2세 문과명글을 누 교육이 곤빠져 크셔유요	
- P-	송선수소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148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5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71-1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366 경상는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234-1, 1235 경상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90-2, 동천리 590-3 경상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390-2, 1485-3 경신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1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96-3, 96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산8-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44-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354-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952-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374-4 경상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244-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134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269 경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572 경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48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607 경상남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463, 465, 466, 715-1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산147-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976-2 경상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465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9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970-1 경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167 경상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65-10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177 경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756-8 경		출전주소	88 문젊0164 프비배무 교육 이 콘바라 크림유용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콤로58번질 8시	
1	바구남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경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건물번호부여 경상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경		건물번호부여 경	건물번호부여 3	건물번호부여 경	건물번호부여 3	건물번호부여 2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건물번호부여 경	건물번호부여 2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경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경		3H C1= 01= 63	22 104 103 103	(20) (20) (20) (20) (20) (20) (20) (20)	

남해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호

2022년 제1회 남해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2년 제1회 남해군 일반임기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25일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	채용	채용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예정직급	인원	기간	
보건관리자 (재난안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사무

※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 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연 령 : 만 18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결격사유>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보 건 관 리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해당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함.

4. 채용 조건

- 🥥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주당 35시간)
-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 보수수준

구 분	연봉액	(천원)	보수	근무시간	ul ¬
丁 亡	상한액	하 한 액	上十	근무시간	비고
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55,731	39,582	하한액	주당 35시간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개별 유선 통보)
 -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2. 4. 4. ~ 2022. 4. 6.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	2022. 4. 8.(예정)			
면접 시험	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2022. 4. 12.(예정)	2022. 4. 15.(예정)			

- * 면접시행은 직무수행계획서 PPT 5분가량 발표 후 면접 실시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 우편접수 시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사전연락 바람 (055-860-3113)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옹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판매 / 응시원서 수입증지첨부란에 인증기 날인
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 A4용지 2~3매 분량
4. 직무수행 계획서	○ A4용지 5매 이내 분량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기재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필 기재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 (사본 가능)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민간근무 경력(재직)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9.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과 주소변동이력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
11.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가능
12.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발급한 자료만 유효 (* 최종 합격자에 한함)
13. 기타이력서 기재내용 증빙할수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055-860-3113)
 - 업무관련 문의(보건관리자) : 남해군 재난안전과 중대재해IF팀 (☎ 055-860-3622)

남해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3호

남해군 대체인력뱅크(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남해군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3월 25일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모집예정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시간	담 당 직 무
일반행정	지방한시임기제 8호	3명	주35시간	○ 일반행정 ○ 각종 증명 민원 등 발급업무 ○ 기타 일반행정 관련업무 등
시설(토목)	지방한시임기제 8호	2명	주35시간	○ 일반토목업무 전반
환경	지방한시임기제 8호	1명	주35시간	○기후 · 대기 등 환경 분야 업무 전반

<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남해군 대체인력뱅크'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인력을 시전에 확보하기 위해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고 결원 발생 시 그 기간에 대해 지방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신속하게 임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근무기간 : **휴직 등에 따른 결원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임용함 (임용일~2022.12.31)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사람은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대체인력뱅크 인력 풀에서 대기(미근무)함
- 선발인원 중에서도 개인별로 임용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업무대행 사유 미발생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자는 휴직 등 결원 발생 시 임용 요청에 지체없이 응해야 하며, 군에서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임용등급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시 임용예정등급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2 법적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라.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3 응시자격

- 가. 공통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행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 공무원 임용령」제65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이전 출생자)
- 다. 주소지 및 성별: 제한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결격사유>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라. 자격기준

모집분야	세 부 자 격 요 건
일반행정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시설(토목)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우대사항】토목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환 경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환경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u>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u>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u>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u>(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개별 유선 통보)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O 면접시행은 직무수행계획서 PPT 5분 가량 발표 후 면접 실시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4. 4.(월) ~ 2022. 4. 6.(수)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O 교부 및 접수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 우편접수 시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사전연락 바람.(055-860-3113)

6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4. 4.(월) ~ 4. 6.(수)	4. 8.(금)	4. 12.(화)	4. 15.(금)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7 보 수

임용등급	기본급	週당 근무시간
지방한시임기제 8호	월 1,652,430원 (1,888,500원 X 35/40)	<u>35시간 기준</u>

※ 기본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별도 지급

※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적용

8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판매 / 응시원서 수입증지첨부란에 인증기 날인
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 A4용지 2~3매 분량
4. 직무수행 계획서	○ A4용지 5매 이내 분량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
6. 자격요건 검 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기재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필 기재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 (사본 가능)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민간근무 경력(재직)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9.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과 주소변동이력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
11.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가능
12.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발급한 자료만 유효 (* 최종 합격자에 한함)
13. 기타이력서 기재내용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u>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u>

9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 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055-860-3113)